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목 차

| | |
|---|----|
| 1조.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 3 |
| 2조. 소개 (Introduction) | 8 |
| 3조. 목적 (Objectives) | 8 |
| 4조. 적용 범위 (Scope of Application) | 9 |
| 5조. 절차 (Procedure) | 9 |
| 6조. AFC 규정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AFC Regulations) | 10 |
| 7조. 라이선스 (License) | 10 |
| 8조. 라이선스 신청자 / 라이선스 소지자 (License Applicant / Licensee) | 13 |
| 9조. 라이선서 (Licensor) | 14 |
| 10조. 기준 및 징계 (Criteria and Sanctions) | 19 |
| 11조. 주요평가절차 (The Core Process) | 22 |
| 12조.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Eligibility for AFC Club Competitions) | 29 |
| 13조. 일반 (Final Provisions) | 30 |
| 14조.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 33 |
| 15조.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 37 |
| 16조.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Criteria) | 41 |
| 17조. 법무 기준 (Legal Criteria) | 53 |
| 18조.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 58 |
| 19조. 마케팅 및 세일즈 기준 (Marketing and Sales Criteria) | 68 |
| 20조. 사회적 책임 기준 (Football Social Responsibility Criteria) | 69 |
| | |
| 별첨 1. K리그 참가를 위한 예외정책 (Exceptions Policy for entering K LEAGUE) ... | 71 |
| 별첨 2. K리그2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승인 신청 | 72 |
|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K LEAGUE 2) | |
| 별첨 3.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 일정 | 73 |
| (K LEAGUE Club Licensing Core Process Calendar) | |
| 별첨 4. AFC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 일정 | 74 |
| (AFC Club Licensing Core Process Calendar) | |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을 기초로 한 K리그 및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부여에 관한 규정

1조 (Article 1):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참고: 단수형 용어는 복수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용어 | 정의 |
|--|---|
| AB 또는 클럽자격재심위원회 Appeal Body | 라이선싱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로 재심 기구 역할을 수행 |
| 회계정책 Accounting Policies |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법인에 의해 채택된 구체적인 절차, 기준, 협정, 규칙, 실행을 통칭함. |
| AFC | 아시아축구연맹 (The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
| AFC 클럽 대회 AFC Club Competitions |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ACLE), AFC 챔피언스 리그2(ACL2) 및 AFC 챌린지 리그(ACGL)를 포함한 AFC가 주최하는 국제 클럽 대회 |
|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ACLE) | AFC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상위 국제 클럽 대회 |
| AFC 챔피언스 리그 2 (ACL2) | AFC가 주최하는 아시아 차상위 국제 클럽 대회 |
|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 | 본 규정 내 재무기준과 관련된 운영 및 기술적 안내를 제공하는 AFC가 발행한 핸드북. 라이선스 신청자의 재무기준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과 템플릿 모음 |
| AFC Club Licensing Quality Standard | AFC가 발행한 라이선서가 클럽 라이선싱 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 |
| AFC Stadium Regulations | AFC 대회 경기개최를 위해 경기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상의 최소 요구기준을 나열한 규정 |
| 연간 회계 재무제표 Annual financial statements | 법정연도 말에 준비하는 재무제표로 통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석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료나 표 등을 의미. |
| 관계기업 Associate | 투자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 (Unincorporated entity)으로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며,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 투자 지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
| 회계감사 Audit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목적은 재무제표가 준비되었는지, 모든 자료가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재무보고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회계사의 검증을 받기 위함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 또는 ‘모든 자료들이 믿을 만하고 잘 제출되었음’ 등의 회계사의 의견이 첨부될 수 있으며, 재무와 기타 정보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역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감사 업무를 통해 회계감사관은 제출된 정보가 잘못 기술되지 않았음에 대해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높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회계감사보고서 내 타당한 확언을 통해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감사완료 (Audited)”는 이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

| 용어 | 정의 |
|--|---|
| 예산 Budget | 미래에 발생가능 하거나 법인에 의해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경영진의 추정을 기초로 법인의 미래재무정보를 포함한 명세표 |
| CLA Club Licensing Administration |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로서 라이선서 내 클럽 라이선싱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 또는 직원 |
| CLAS 또는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CLAS or AFC Club Licensing Administration System | 본 규정의 실행, 평가 및 집행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정보 취득 및 산하 클럽에 대한 정보를 라이선서들간 공유하기 위해 AFC가 개발한 IT 시스템 |
| 클럽 라이선싱 기준 또는 기준 Club Licensing Criteria or Criteria | 라이선스 승인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으로 본 규정 내 7개의 카테고리 (스포츠, 인프라, 인사행정, 법률, 재무, 마케팅 및 세일즈, 사회적 책임)로 분류되어 설정되어 있다. |
| 통제 Control | 기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법인의 재정 및 운영정책을 관리하는 지배력. 통제는 주식 보유, 정관 또는 계약을 통해 획득 가능 |
| 연결 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 단일 경제 실체의 것과 같이 표시된 그룹의 재무제표 |
| 주요 경제적 중요 사건 또는 상황 Event or condition of major economic importance | 직전 회계연도 또는 반기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건 또는 상태가 보고 실체의 재무제표에 자료로 고려되거나 보고 실체의 운영, 재무상태 및 순자산의 결과에 대해 다른 (다양한) 발표가 요구될 경우 해당 사건 또는 조건은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다. |
| 국내 클럽 대회 KFA Club Competitions | 협회의 ‘국내대회승인 및 운영지침’에 따라 승인받은 협회 또는 연맹 주최의 토너먼트 또는 리그 대회 중 K리그 클럽이 참가하는 FA컵, K리그1, K리그2 및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등을 포함한다. |
| FIB 또는 클럽자격심의회 First Instance Body | 라이선싱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로 1심 기구 역할을 수행 |
| FIFA RSTP |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선수 등록 및 이적에 대한 FIFA 규정 |
| 회계연도 Financial year | 법정 마감일까지의 회계보고기간으로 반드시 1년 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중간기간은 아니다. |
| 미래재무정보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 해당 법인의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 또는 활동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 효과에 대한 정보 |
| 계속기업 Going concern |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계속 운영되어 성장중인 기업으로 ‘계속기업’ 개념 또는 추정 은 청산에 대한 유의적인 위협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을 나타내는 회계용어 이다. 보고 실체는 일반적으로 계속기업의 관점으로 본다. 이는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보고 실체가 청산 의도 또는 청산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거래 중단 또는 채권자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

| 용어 | 정의 |
|---|--|
| 그룹 Group | 모회사와 모든 자회사. 모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가진 법인체. |
| 역사적 재무정보 Historic financial information | 법인과 관련된 과거 사건의 재무 영향을 분석한 정보. 역사적 재무정보는 라이선싱 결정 전 재무 실적과 상황에 대한 자료로 사용된다. |
| 반기 재무제표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원본 또는 요약재무제표 세트가 포함된 재무보고서 |
| 반기 Interim period | 하나의 회계연도 보다 짧은 재무 보고 기간. 반드시 6개월일 필요는 없다. |
|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사업체 |
| 대한축구협회 Korea Football Association | 대내외적으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경기단체로 본 규정 내에서 ‘협회’로 부른다. |
| 한국프로축구연맹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 한국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를 주관하는 경기단체로 본 규정 내에서 ‘연맹’으로 부른다. |
| K리그 K LEAGUE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상위 프로축구리그로 K리그1 (1부 리그)과 K리그2 (2부 리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포함하여 통칭한다. |
| K리그1 K LEAGUE1 | K리그 1부 리그 명칭 |
| K리그2 K LEAGUE2 | K리그 2부 리그 명칭 |
| K리그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 K LEAGUE Club Licensing Manual |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서술한 실무서. 라이선서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규정의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의미 전달과 평가의 진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
| 라이선스 License | K리그1, K리그2 또는 AFC 클럽 대회 (해당 시)의 참가자격이자 참가를 위해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최소 요구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연맹이 발급하는 증명서 |
| 라이선스 신청자 License applicant |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국내 및 국제 클럽 대회를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전적이고 고유한 책임을 갖는 법인체 |
| 라이선스 소지자 Licensee | 라이선서를 통해 라이선스를 승인받은 라이선스 신청자 |

| 용어 | 정의 |
|---|--|
| <p>라이선스 시즌 License season</p> | <p>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시즌. 라이선서가 라이선싱 결정문을 AFC에 제출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동일 제출일 까지 지속된다.</p> |
| <p>라이선싱 사이클 Licensing Cycle</p> | <p>주요 평가 절차의 실행부터 완료까지 라이선서가 지정한 기간</p> |
| <p>라이선서 Licensor</p> | <p>본 규정에 의거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하고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주체</p> |
| <p>라이선싱 결정 목록 List of licensing decisions</p> | <p>AFC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형식을 통해 라이선서가 라이선싱 인허가 절차를 통해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를 승인 또는 불승인 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 라이선서가 AFC에 제출하는 목록</p> |
| <p>(회계적) 중요한 또는 중요성 Material or Materiality</p> | <p>자료 혹은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진술은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가 제출한 재무 정보를 기초로 한 사용자의 결정에 개별적 또는 총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중요하다. 회계적 중요성은 주변 환경 또는 문맥 내에서 판단되는 정보의 누락 또는 잘못된 진술의 크기나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혹은 정보의 크기 혹은 속성 또는 둘 다의 조합에 따라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p> |
| <p>모회사 Parent</p> | <p>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p> |
| <p>회원 Registered member</p> | <p>국내법과 국가 협회 규정을 따라야 하는 국가별 협회의 회원과 가맹 리그의 모든 법인체</p> |
| <p>재무보고실체 Reporting entity/entities</p> | <p>등록된 회원 단체 또는 축구 기업 또는 법인의 그룹 또는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법인의 기타 다른 독립체들의 조합으로 관련 정보는 클럽 라이선싱 상의 목적으로 라이선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
| <p>(재무정보) 검토 Review</p> | <p>(재무정보)검토 업무의 목적은 회계감사관이 검토를 기초로 정의된 회계 보고 틀에 따라 회계감사관이 모든 면을 대상으로 해당 재무정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회계감사관의 주의를 요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p>(재무정보)검토는 회계감사와는 대조적으로 재무정보가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아님에 대한 확실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은 아니다. (재무정보) 검토는 문의하기, 재무 및 회계 사안에 대한 책임자, 분석적 접근 및 기타 검토 절차로 구성된다.</p> <p>(재무정보)검토는 재무정보회계감사관의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가져올 수 있으나, 회계감사를 요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p> |
| <p>유의적인 변화 Significant change</p> | <p>라이선서에게 이미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고려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라이선싱 서류의 제출 전에 발생한 경우, 다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한다.</p> |
| <p>유의적인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p> | <p>재정 및 운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제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능력. 중대한 영향력은 지분 소유, 정관 또는 계약을 통해 획득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 당사자 또는 동일한 최종 통제 기구의 집합체 (AFC, AFC 회원 협회 및 산하 리그 제외)는 보고기간 내 라이선스 소지자의 총 수입의 30% 이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할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p> |

| 용어 | 정의 |
|--|---|
|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장 Stadium</p> | <p>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다:</p> <p>(1) 경기장 외부를 둘러싼 펜스부터 경기장 내부 시설을 포함한 전체 구역 (출입을 위해 유효한 AD카드 또는 입장권이 필요한 범위로 확대) 및 경기일 및 경기장 내에서 공식훈련이 개최되는 모든 대회기간 중 경기장의 상공</p> <p>(2) 주차시설</p> <p>(3) VIP 및 호스피탈리티 구역 (호스피탈리티 빌리지 포함)</p> <p>(4) 상품판매구역</p> <p>(5) 건물</p> <p>(6) 필드(FOP)</p> <p>(7) 기자석</p> <p>(8) 방송 컴파운드</p> <p>(9) 경기장 미디어 센터</p> <p>(10) 기자회견장</p> <p>(11) 믹스드존</p> <p>(12) 스탠드</p> <p>(13) 스탠드 인접 구역</p> |
| <p style="text-align: center;">법정 마감일 Statutory closing date</p> | <p>보고 법인의 매 회계연도 마감일</p> |
| <p style="text-align: center;">후속 사건 Subsequent events</p> | <p>라이선싱 결정 후 발생하는 사건 또는 상태</p> |
| <p style="text-align: center;">자회사 Subsidiary</p> | <p>(모기업으로 알려진) 다른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파트너십과 같은 비법인을 포함한 독립체</p> |
| <p style="text-align: center;">부속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p> | <p>공시 및 회계정보에 대한 최소 필요요건을 불충족 시, 재무제표와 더불어 라이선서에게 제출되는 재무 정보</p> <p>부속 정보는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회계 및 회계 정책을 기초로 준비되어야 한다. 재무정보는 연간재무제표의 준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출처로부터 발췌되어야 한다. 해당 시, 부속 정보 내 공표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와 일치하거나 맞추어 진 상태로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훈련시설 Training facilities</p> | <p>클럽의 등록된 선수들이 축구 훈련 및 청소년 발전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장소</p> |

본 규정의 목적상, 만일 문맥 내 다음을 포함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 1)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며, 그 반대도 해당된다.
- 2) 남성형은 여성형을 포함하며, 그 반대도 해당된다.
- 3) 자연인에 대한 언급은 법인과 기업인을 포함한다.
- 4) 모든 정의된 용어는 별도 서술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AFC 정관 기술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조 (Article 2): 소개 (Introduction)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이하 “본 규정”)은 국내 클럽 대회 및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 클럽이 충족해야 하는 필수기준이 포함된 기본 작업문서이다.

2.1 본 규정은 협회, 연맹 및 AFC가 주최하는 클럽 대회에 참가하는 클럽을 관리하기 위해 체계화시킨 클럽 라이선싱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2.2 본 규정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다:

2.2.1 ‘라이선서’가 준수해야 할 최소 요구기준 및 클럽 라이선싱 기준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라이선서가 준수해야 할 최소 절차;

2.2.2 국내 클럽 대회 및/또는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대회 참가자격 (이하 “라이선스”) 및 라이선스 신청자;

2.2.3 국내 클럽 대회 및/또는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승인을 위해 클럽이 이행해야 할 필수 기준.

2.3 본 규정은 라이선싱 기준의 해석 및 평가방식을 제공하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 (이하 “매뉴얼”)을 통해 보충된다.

3조 (Article 3): 목적 (Objectives)

3.1 본 규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3.1.1 국내 클럽 대회 및 AFC 클럽 대회의 청렴성 및 신뢰성 보호;

3.1.2 한 시즌 동안 국내 클럽 대회와 AFC 클럽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성 확보;

3.1.3 K리그의 재정적, 스포츠적, 법적, 인적, 행정적, 시설, 마케팅 및 사회적 책임관련 기준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한 클럽의 발전 유도;

3.1.4 K리그 내 축구의 모든 측면에 있어 지속적인 향상과 각 클럽의 유소년 훈련 및 관리에 지속적인 우선순위 부여;

3.1.5 클럽의 적절한 수준의 경영 능력 형성;

3.1.6 클럽의 재정 능력 개선, 신뢰성 및 투명성의 향상 및 클럽이 자신들의 피고용인, 국세청 및 다른 클럽에 대한 부채를 기한 내 해결하도록 하여 채권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 부여;

3.1.7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안전한 경기장 및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클럽의 스포츠 제반시설 개선.

4조 (Article 4): 적용 범위 (Scope of Application)

4.1 본 규정은 AFC, 협회 및 연맹 주최 클럽 대회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적용된다.

4.2 국내 클럽 대회 참가자격을 유지하고 대회를 참가하거나, 국제 클럽 대회를 참가하는 클럽은 각 대회에 해당하는 클럽 라이선싱 절차를 준수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대회 | 클럽 라이선싱 절차 | 라이선스 | 라이선서 |
|-----------------|--------------|-----------|------|
|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 AFC 클럽 라이선싱 | AFC 라이선스 | 연맹 |
| AFC 챔피언스 리그 2 | AFC 클럽 라이선싱 | AFC 라이선스 | 연맹 |
| K리그1 | K리그1 클럽 라이선싱 | K리그1 라이선스 | 연맹 |
| K리그2 | K리그2 클럽 라이선싱 | K리그2 라이선스 | 연맹 |

5조 (Article 5): 절차 (Procedure)

5.1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운영 (Management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5.1.1 연맹은 클럽 라이선싱 제도, 소관 행정부서 및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5.1.2 절차는 클럽의 라이선싱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및 증빙과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 (이하 “CLA”) 및 CLA가 임명한 전문평가단에 의한 라이선싱 서류 검토, 평가 및 개선 권고로 이루어진다.

5.2 라이선싱 절차 (Licensing Process)

5.2.1 국내 클럽 대회 및/또는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 클럽은 라이선스 발급 시즌 (Season to be Licensed)의 직전 시즌에 라이선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2.2 클럽은 국내 클럽 대회 및 AFC 클럽 대회 (해당 시) 참가를 위해 자신의 라이선스를 승인/갱신받기 위해 매 시즌 라이선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2.3 라이선싱 절차의 시작 시점에 연맹은 관련 절차, 주요평가절차 (Core Process)의 과정 및 진행계획 등을 클럽에 통보하는 라이선싱 회람을 발송해야 한다.

5.2.4 본 규정상의 기간/기한은 관련 통지 또는 연락을 수신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도 해당 기간에 포함되며, 고지된 마지막 날짜/마감일의 자정 (한국시간 기준)까지 이다. 만일 기간/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날/마감일은 바로 다음 영업일이 된다.

6조 (Article 6): AFC 규정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AFC Regulations)

- 6.1 본 규정은 국내 클럽 대회 참가자격 (이하 “K리그1/K리그2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이하 “AFC 라이선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규정은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내 기술된 AFC 라이선스의 각 기준 및 라이선싱 절차상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 6.2 라이선서가 본 규정에 도입한 최소 요구기준 강화, 등급 상향 또는 추가 기준은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서도 적용된다.
- 6.3 AFC 라이선스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은 K리그 라이선스 심사 및 승인과 별도로 시행된다.
- 6.4 AFC 클럽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본 규정과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7조 (Article 7): 라이선스 (License)

7.1 라이선스는 본 규정에 따라 라이선서에 의해 라이선스 신청자가 다음을 목적으로 모든 최소 요구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여 발급된 증명서이다.

7.1.1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또는 KFA가 주최하는 대회(해당 시)의 참가자격 갱신

7.1.2 AFC 클럽 대회 출전을 위한 참가신청 절차의 일부

7.2 원칙 (Principle)

7.2.1 라이선스는 본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다음의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 ① K리그1 라이선스 (K LEAGUE1 License)
- ② K리그2 라이선스 (K LEAGUE2 License)
- ③ K리그 프리미어 라이선스 (K LEAGUE Premier License)
- ④ AFC 라이선스 (AFC License)

7.2.2 라이선서는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신청 안내를 공지해야 하고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서에게 서면 신청서 제출을 통해 라이선싱 제도 내 기준을 이행할 것임을 신고해야 한다.

7.2.3 본 규정 내 명시된 기준을 라이선서와 AFC가 각 지정한 마감일 내 충족을 완료하고, 클럽의 대회 성적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클럽에 한하여 다음 시즌 국내 클럽 대회 및/또는 AFC 클럽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회 규정 내 기타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7.3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7.3.1 K리그1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클럽은 K리그1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7.3.2 K리그2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클럽은 K리그1 또는 K리그2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7.3.3 대회 성적을 통해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을 확보한 모든 클럽은 AF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7.4 라이선스 승인/양도 (Granting a License / Transfer of a License)

7.4.1 라이선스 신청자가 본 규정 14조부터 20조까지 명시된 각 라이선스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라이선스 기준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결정된다.

7.4.2 라이선스 신청자가 대회 참가에 필요한 모든 'A-클럽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가 승인된다.

7.4.3 라이선스 신청자가 대회 참가에 필요한 'A-클럽 라이선싱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승인되지 않는다.

7.4.4 라이선스는 제 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7.5 라이선스 유효기간/취소 (Validity of a License / Withdrawal of a License)

7.5.1 라이선스는 해당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한 시즌에 한해 유효하며, 해당 유효기간은 변동될 수 없다.

7.5.2 라이선스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만료된다:

- ① 라이선스가 발급된 시즌이 끝난 시점 (Licensing Season); 또는
- ②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대회가 폐지 시.

7.5.3 라이선스 소지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라이선스 소지자가 취득한 라이선스는 취소되거나 FIB 또는 AB의 결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① 라이선스 소지자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또는/ 및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내 라이선싱 기준을 불충족 하고,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 ② 라이선스 소지자가 파산, 특별청산, 회생 또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 ③ 라이선스 소지자가 합병, 분할, 사업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을 양도할 경우; 또는
- ④ 라이선스 신청자가 연맹 정관에 의거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7.5.4 클럽의 라이선스 취소가 예상되는 경우, 연맹은 즉시 이를 협회와 AFC에 통보해야 한다.

7.5.5 클럽의 라이선스가 취소된 경우, 클럽의 대회참가 실격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① 연맹 주최 대회에 대한 실격 여부는 연맹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② 협회 주최 대회에 대한 실격 여부는 협회를 통해 결정된다.

③ AFC 클럽 대회에 대한 실격 여부는 AFC가 통해 결정한다.

7.5.6 연맹은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 및 상벌 규정을 통해 클럽을 제재하거나 향후 K리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5.7 협회는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 및 공정위원회 규정을 통해 클럽을 제재하거나 향후 국내 클럽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5.8 AFC는 적용 가능한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및 AFC Disciplinary and Ethics Code 를 통해 클럽을 제재하거나 향후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6 K리그1 라이선스 (K LEAGUE1 License)

7.6.1 K리그1 라이선스는 K리그1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대회 참가자격으로, K리그1 라이선스 취득이 클럽의 다음 시즌 K리그1 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시즌 클럽이 K리그1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리그1 라이선스를 승인받고 대회요강에 명시된 국내 대회 성적을 충족해야 K리그1을 참가할 수 있다.

7.6.2 K리그1 라이선스는 국내 대회 성적에 따라 K리그2 및/또는 FA컵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

7.6.3 K리그1 라이선스를 신청한 클럽이 K리그1 라이선스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연맹은 해당 클럽의 K리그2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단, 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7.7 K리그2 라이선스 (K LEAGUE2 License)

7.7.1 K리그2 라이선스는 K리그2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대회 참가자격으로 K리그2 참가를 희망하는 클럽은 참가를 희망하는 시즌의 직전 시즌에 K리그2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연맹 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7.2 K리그2 라이선스는 국내 대회 성적에 따라 FA컵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

7.7.3 연맹은 K리그2 라이선스 취득에 실패한 클럽에 대한 K리그2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클럽은 제재금이나 승점 감점을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7.4 K리그2 라이선스를 신청한 클럽은 지정된 날짜까지 K리그1 라이선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7.8 K리그 프리미어 라이선스 (K LEAGUE Premier License)

7.8.1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명시된 모든 클럽 라이선싱 기준('C-클럽 라이선싱 기준' 포함)을 충족한 라이선스 신청자에게는 모범적인 클럽 운영을 인증하는 의미의 K리그 프리미어 라이선스를 수여한다.

7.8.2 K리그 프리미어 라이선스 승인 여부는 라이선서가 임명한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기초로 클럽자격심의위

원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결정은 최종이다.

7.8.3 K리그 프리미어 라이선스는 국내 대회 성적에 따라 K리그2 및/또는 FA컵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포함한다.

7.9 AFC 라이선스 (AFC License)

7.9.1 AFC 라이선스는 AFC 클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대회 참가자격으로, 다음 시즌 클럽이 AFC 클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AFC 규정에 명시된 국내대회에서 입상하고 AF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AFC 클럽 대회 참가와 관련된 최종 결정 권한은 AFC가 가진다.

7.10 신규 가맹 클럽에 대한 클럽 라이선싱 (Club Licensing system for new registered club)

7.10.1 K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연맹 ‘클럽’ 규정 제2장에 따라 K리그2 신규 참가 클럽으로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7.10.2 연맹 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또는 가입 예정인) 클럽은 ‘별첨 2’에 따라 K리그2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 임시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8조 (Article 8): 라이선스 신청자 / 라이선스 소지자 (License Applicant / Licensee)

8.1 소개 (Introduction)

8.1.1 본 조를 통해 K리그와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는 법인체 및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법인체에 대해 규정한다.

8.1.2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법인체는 ‘라이선스 신청자 (License Applicant)’로 부른다.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서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시, ‘라이선스 소지자 (Licensee)’가 된다.

8.2 원칙 (Principle)

8.2.1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는 국내외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갖는 법인 형태의 축구클럽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8.2.1.1 협회 및 연맹 정관에 따라 협회와 연맹의 회원으로 가맹된 법인체 (이하 “회원”); 또는

8.2.1.2 협회 및/또는 연맹에 등록된 회원과 계약적 관계를 가진 법인체 (이하 “축구기업”)

8.2.2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는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및 클럽 라이선싱 기준 이행에 대해 전적인 의무 및 책임을 진다.

8.2.3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는 연맹에 다음에 대한 제공 의무를 갖는다:

8.2.3.1 라이선싱 기준 이행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서류(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무보고실체 (Reporting entity) 관련 사항 포함):

8.2.3.2 라이선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 기타 정보 및 서류:

8.2.3.3 라이선싱 서류 제출 후 기존 제출된 정보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에게 유의적인 변화 [법인 형태, 법인 그룹 구조 또는 정체성의 변화(본사, 사명, 또는 클럽 색상), 이하 동일] 또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정보 및 서류:

8.2.3.4 CLA는 라이선스 신청, 서류 제출과 관련된 문제 발생,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와 CLA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8.2.4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는 다음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8.2.4.1 프로축구 선수와 서면으로 선수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모든 선수는 절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8.2.4.2 계약적 또는 법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보수를 선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8.2.4.3 국내외 대회를 참가하는 등록 선수로 구성된 축구팀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갖는다;

8.2.4.4 라이선서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는 공시된 제출 마감일까지 CLAS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8.2.5 클럽은 매년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각 대회의 다음 시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9조 (Article 9): 라이선서 (Licensor)

9.1 원칙 (Principle)

9.1.1 라이선서는 AFC 회원협회로서 국내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한다.

9.1.2 AFC 회원협회는 AFC 정관 10.1조를 준수해야 한다.

9.1.3 라이선서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 운영을 위해 CLAS를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9.1.4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에 의거, 협회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연맹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협회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적절한 시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9.1.5 클럽 라이선싱 제도와 관련된 주요 행정 조직은 아래와 같다:

- ① 연맹 이사회: 본 규정의 승인, K리그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 ②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 (이하 “CLA”): 클럽 라이선싱 제도 실행 및 운영;
- ③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이하 “FIB”): 라이선싱 결정을 위한 1심 기구로서 역할;
- ④ 클럽자격재심위원회 (이하 “AB”): 라이선싱 결정을 위한 재심 기구로서 역할;
- ⑤ 상벌위원회: K리그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연맹 규정 위반 및 준수성 감사 결과에 대한 제재 결정;
- ⑥ 전문평가단: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발전을 위해 CLA를 지원할 목적으로 라이선서가 위임한 전문가 집단;

- ⑦ AFC: AFC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AFC 규정 위반 및 준수성 감사 결과에 대한 제재 결정;
- ⑧ 스포츠중재재판소 (이하 “CAS”): AB의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 기구.

9.2 라이선서 (Licensor)

9.2.1 연맹은 라이선서이다. 협회는 AFC의 승인을 바탕으로 연맹에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위임한다.

9.2.2 라이선서는 라이선싱 제도를 관리하고, 라이선싱 기구를 지정하며, 필요한 절차를 결정한다.

9.2.3 라이선서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① 9.3조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적절한 라이선스 행정부 설치
- ② 9.4조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최소 2개의 의사 결정 기구 설치
- ③ 10.3조에 정의 된 제재 목록 작성
- ④ 11조에 정의 된 주요평가절차 정의
- ⑤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의 적절성을 고려 후 평가하며 11.2조, 11.3조에 따라 평가 절차 정의
- ⑥ 9.8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라이선스를 신청한 클럽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라이선스 절차 중 제공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 ⑦ 주요평가절차의 엄격한 준수
- ⑧ 각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라이선스가 승인되기 위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결정
- ⑨ AFC Club Licensing Quality Standard 준수

9.3 클럽 라이선싱 행정부 (Club Licensing Administration, CLA)

9.3.1 라이선서는 CLA를 운영할 의무를 갖는 라이선싱 매니저를 임명해야 한다.

9.3.2 라이선서는 클럽 라이선싱 매니저 임명 또는 변경 시 이를 서면으로 AFC에 통보해야 한다.

9.3.3 CLA의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①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준비, 실행 및 향후 발전 방안;
- ②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CLAS) 접속 및 운영;
- ③ 라이선스 신청자를 위한 CLAS 사용 교육 및 지원 제공;
- ④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 ⑤ 시즌 중 라이선스 소지자에 대한 지원, 자문 및 모니터링;
- ⑥ 라이선싱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라이선스 소지자가 라이선서에게 사전에 제출한 정보에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맹, 협회 및 AFC에 통보;
- ⑦ AFC 및 다른 AFC 회원협회의 라이선싱 부서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업무연락을 담당;
- ⑧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라이선스 평가 보고서 작성.

9.3.4 CLA 내에는 회계/회계감사 관련 학위/자격증 및 재무 관련 경력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한 명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 회계자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9.3.5 CLA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발급된 라이선스에 대한 요건 유지를 실패한 경우, 해당 사례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다. CLA는 연맹 내 타 부서에 라이선스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 9.3.6 CLA는 라이선스 신청자로부터 설명, 추가 서류 및 정보 요청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추가 증빙자료 및 해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CLA의 재량이다.
- 9.3.7 CLA는 AFC의 마감일과 K리그 개막일을 고려하여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에 대한 일정을 수립한다.
- 9.3.8 CLA는 라이선스 발급, 제재, 라이선스 취소 및 기타 라이선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 9.3.9 라이선스 소지자가 본 규정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CLA는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FIB, AB 또는 상벌위원회에 징계절차에 회부 할 수 있다.
- 9.3.10 CLA 및 CLA가 요청한 기타 전문평가위원은 FIB 및 AB의 회의에 참석한다. 본 회의에서 CLA의 역할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며, 해당 인원은 투표권이 없다.
- 9.3.11 라이선싱 절차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라이선싱 절차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안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9.3.12 CLA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와 관련된 서류 및 전자 문서와 기록 등을 보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로부터 수신한 서류 및 기록에 대한 최소 보존 연한은 5년이며, 라이선싱 결정과 관련된 서류 및 기록은 최소 10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 정보 및 기록은 연맹의 내부 서버 또는 보조기억장치에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된다.
- 9.3.13 모든 라이선스 결정이 완료되면 CLA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효력 및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간 검토 회의를 개최한다.
- 9.3.14 CLA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 참여자로부터 본 제도와 관련된 의견을 수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9.4 의사결정기구 (Decision-making Bodies)

9.4.1 라이선서는 아래 두 개의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 ① 클럽자격심의위원회 (1심 기구 / First Instance Body, FIB)
- ② 클럽자격재심위원회 (재심 기구 / Appeals Body, AB)

9.4.2 의사결정기구는 라이선서는 물론 상호간 독립된 기구이어야 한다. 해당 기구는 CLA로 부터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9.4.3 의사결정기구는 클럽에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규정 내 명시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9.4.4 의사결정기구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 다음 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

- ① 마감일 (예, 제출 마감일 등);
- ② 평등 대우의 원칙 보호;
- ③ 대표자 (법정 대표자);
- ④ 청문권리 (예, 청문회 등);
- ⑤ 공식 언어 (해당 시);
- ⑥ 요청 기한 (예, 산출, 통지, 준수, 중단, 연장 등);
- ⑦ 재심 청구 기한;

- ⑧ 항소의 효과 (예, 지연방지 효과);
- ⑨ 요청 증거의 유형;
- ⑩ 입증 책임 (예, 라이선스 신청자는 입증 책임을 가진다);
- ⑪ 결정 (예, 논리적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 ⑫ 이의 제기 사유;
- ⑬ 답변의 내용 및 형식;
- ⑭ 심의/청문회;
- ⑮ 진행비용/행정수수료/보증금.

9.5 클럽자격심의위원회 (1심 기구 / First Instance Body, FIB)

9.5.1 FIB는 1심 기구로서 라이선서가 지정한 마감기한에 맞춰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아래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9.5.1.1 라이선스 신청자의 라이선스 승인/불승인

9.5.1.2 본 규정 10.1.3조에 규정된 ‘B-클럽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제재

9.5.1.3 라이선스 소지자의 라이선스 취소 (라이선스 매니저의 요청 시)

9.5.2 라이선스 발급 불승인, 라이선스 취소 또는 제재 부과 시, 해당 결정은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해당 사유를 포함해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9.5.3 본 규정 및/또는 매뉴얼에 명시된 제출 요구 서류의 미제출 및/또는 라이선서가 설정한 마감일 이후의 서류 제출에 따른 라이선스 발급 불승인 시, FIB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이며, 재심 대상이 아니다.

9.5.4 FIB는 ‘A-클럽 라이선싱 기준’ 또는 ‘B-클럽 라이선싱 기준’ 불충족, 제출 마감일 미준수, CLA에 대한 미협조를 포함해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규정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상벌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9.5.5 FIB는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청하거나 자료의 재제출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9.5.6 라이선싱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서면 작성된 결정문;
- ② 결정 사유;
- ③ 마감 기한;
- ④ 재심청구권 안내.

9.5.7 재심 청구 기한까지 FIB의 결정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9.6 클럽자격재심위원회 (재심 기구 / Appeals Body, AB)

9.6.1 AB는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라이선스 승인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9.6.2 FIB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재심청구인이 기한 내 재심을 청구한 경우, AB는 FIB의 결정을 재심사하여 해당 결정을 유지하거나, 필요 시 FIB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9.6.3 AB는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서가 FIB 이전까지 제출한 해당 케이스 관련 서류 및 증거만을 참고한다. 재심신청서는 지정된 마감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한다.
- 9.6.4 라이선스 발급 불승인, 라이선스 취소 또는 제재 부과 시, 해당 결정은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해당 사유를 포함해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 9.6.5 AB의 결정은 스위스 로잔 소재의 스포츠 중재 재판소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에 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CAS가 최종 재심 심의기구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K리그 및 AFC 클럽 대회 출전과 관련된 마감기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7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 (Requirements of members of the decision making bodies)

- 9.7.1 FIB 및 AB 위원은 CLA로부터 추천을 받아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9.7.2 FIB 및 AB 위원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해촉할 수 있다
 - 9.7.2.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 9.7.2.2 업무 수행에 있어 기준 위반과 같은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 9.7.3 이사회는 FIB 및 AB 위원의 임기 중 교체 또는 총원 할 수 있다.
- 9.7.4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연맹 정관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9.7.4.1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9.7.4.2 라이선스 신청자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이 의심되거나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활동을 삼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이 라이선스 신청자의 구성원, 주주, 사업 파트너, 후원자 또는 자문 위원 등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 9.7.4.3 라이선싱 매니저와 병행해서는 안 된다;
 - 9.7.4.4 연맹의 상벌위원회와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9.7.4.5 협회 또는 연맹의 이사회와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9.7.4.6 K리그 클럽의 경영진과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9.7.4.7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최소 1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함해야 한다;
 - 9.7.4.8 AB 위원은 협회 또는 연맹의 직원이거나 해당 정관상의 의사결정기구나 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9.7.5 의사결정기구의 정족수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각 위원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해당 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9.7.6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CLA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밀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라이선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위원은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한다.

9.7.7 상기 자격요건에 추가적으로 라이선서는 전문적인 수준의 역할 수행을 위해 라이선싱 기구의 구성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학문적, 전문적 훈련 및 경력 등)

9.7.8 의사결정기구 위원이 라이선스 신청자와의 관계에 있어 독립성이 의심되거나,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동 기권 처리해야 한다.

9.8 동등한 대우 및 비밀보장 (Equal treatment and Confidentiality)

9.8.1 라이선서는 주요평가절차 진행 중 모든 라이선스 신청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9.8.2 라이선서는 라이선싱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해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완전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라이선싱 과정에 관여하거나 라이선서를 통해 임명된 자는 과업을 담당하기 전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10조 (Article 10): 기준 및 징계 (Criteria and Sanctions)

10.1 기준 (Criteria)

10.1.1 기준의 단계적 변화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 7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 ①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 ②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 ③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 ④ 법무 기준 (Legal criteria);
- ⑤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 ⑥ 마케팅 및 세일즈 기준 (Marketing and Sales Criteria);
- ⑦ 사회적 책임 기준 (Football Social Responsibility Criteria).

10.1.2 14조부터 20조까지 정의된 기준은 국내 클럽 대회 및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를 승인받기 위해 클럽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10.1.3 14조부터 20조까지 기술된 기준은 A, B, C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해당 분류는 AFC 라이선싱 규정과 부합한다.

① ‘A-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본 등급은 라이선스 신청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라이선스 신청자가 ‘A-클럽 라이선싱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K리그1, K리그2 라이선스 및/또는 AFC 라이선스 취득이 제한된다.

② ‘B-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라이선스 신청자가 ‘B-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라이선서로부터

10.3조에 기술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K리그1, K리그2 라이선스 및/또는 AFC 라이선스 발급은 가능하다.

③ ‘C-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C-클럽 라이선싱 기준’은 모범사례로 권고된다. 본 기준은 향후 필수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C-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항목 불이행은 K리그1, K리그2 및/또는 AFC 클럽 라이선스의 발급 불승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10.3조에 기술된 제재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K리그 프리미어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C-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10.1.4 라이선서는 국내 클럽 대회 및/또는 AFC 클럽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AFC가 설정한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최소 요구기준 (minimum requirements)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서는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10.1.5 라이선싱 기준은 클럽 운영의 최소 요구기준으로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10.2.1 AFC 클럽 대회와 관련하여,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내 ‘Article 4. Exceptions Policy’에 따라 연맹은 AFC 사무국으로부터 본 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를 승인받을 수 있다.

10.2.2 국내 클럽 대회와 관련하여, 연맹은 별첨1에 따라 본 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본 예외를 승인함에 있어 AFC 사무국의 검토 의견을 기초로 한다.

10.3 제재 (Sanctions)

10.3.1 징계절차

10.3.1.1 본 조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10.3.1.2 FIB 또는 AB는 본 규정에 설정된 ‘B-클럽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10.3.1.3 만일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가 본 규정을 위반 시, FIB 또는 AB는 본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을 위해 이를 상벌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0.3.1.4 사안이 중대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 될 경우, 상벌위원회는 연맹 규정에 의해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에 따라 제재를 결정한다.

10.3.1.5 제재결정기구의 결정사항은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된다.

10.3.1.6 AFC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AFC가 라이선싱 결정에 있어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위반을 발견했다면, AFC는 관련 규정에 따라 라이선서를 AFC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0.3.2 제재의 종류, 형태 및 범위

10.3.2.1 라이선싱 제재의 종류, 형태 및 범위는 본 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0.3.2.2 제재의 결정 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① 본 규정의 위반 성격 및 심각성
- ② 동일 라이선싱 사이클 내 또는 현재 라이선싱 사이클의 직전 사이클을 포함해 2회 연속 라이선싱 사이클 내에서 본 규정의 위반이 반복된 경우, 위반의 종류, 성격, 심각성 및 중요도 및 반복성 등
- ③ 규정 위반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가중처벌 적용 여부
- ④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과거에 경고, 교육 또는 제재가 있었는지 여부
- ⑤ 행위 저지에 대한 필요성
- ⑥ 제도의 목적 부합에 필요한 제재
- ⑦ 제재 경감 또는 강화 사유, 기타 제재와 관련해 적절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

10.3.2.3 라이선싱 신청자/소지자가 2개 이상의 라이선싱 기준 불충족 시, 가장 심각한 위반 사안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유에 따라 제재는 강화될 수 있다.

10.3.3 서류 미제출, 허위 서류 제출, 제출기한 미준수, 의사결정기구 또는 CLA에 미협조, 'A-클럽 라이선싱 기준' 또는 'B-클럽 라이선싱 기준' 미충족 등과 같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위반 시, FIB 및/또는 AB는 아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경고
- ② 견책
- ③ 보증서 및 이행각서 제출
- ④ AFC, 협회, 연맹 주최대회 참가 제한
- ⑤ 특정 마감일까지 기준 이행
- ⑥ 추가적인 세부 정보 요청
- ⑦ 개선계획 제출
- ⑧ 라이선싱 취소
- ⑨ 라이선싱 효력 중지
- ⑩ 연맹 상벌위원회 회부를 통한 아래 제재 결정
 - 제재금
 - 승점 감점
 - 축구 관련 활동 금지
 - 정직
 - 출전정지
 - 선수등록 금지
 - 하부리그 강등
 - 대회에서 퇴출
 - 상금 / 지원금 / 보조금 지급 보류
 - 무관중 경기

- 중립 경기
- 경기장 수용인원 축소
- 특정 경기장 내 경기개최 금지

10.3.4 ‘B-클럽 라이선싱 기준’ 불이행 시, 최소 제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위반 유형 | 최소 제재 기준 |
|----|--|----------|
| 1 | 동일 라이선싱 사이클 내 2개 이내 ‘B-클럽 라이선싱 기준’ 미이행 | 경고 |
| 2 | 주요평가절차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 이후 기준 충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경고 |
| 3 | CLA에 대한 비협조 | 상벌위원회 회부 |
| 4 | 동일 라이선싱 사이클 내 3개 이상의 ‘B-클럽 라이선싱 기준’ 미이행 | 상벌위원회 회부 |
| 5 | 동일한 ‘B-클럽 라이선싱 기준’을 2회 연속 라이선싱 사이클에서 미이행 | 상벌위원회 회부 |

11조 (Article 11): 주요평가절차 (The Core Process)

11.1 소개 (Introduction)

본 조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평가 절차 (이후 ‘주요평가절차’)를 정의한다.

11.1.1 원칙

11.1.1.1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관리하기 위해 라이선서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기준을 라이선서와 AFC에 증빙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11.1.1.2 주요평가절차는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 (스포츠 기준, 시설 기준, 인사 및 행정 기준, 법무 기준, 재무 기준, 마케팅 기준 및 사회적 책임 기준)의 증빙 절차와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관리에 대해 정의한다.

11.1.1.3 주요평가절차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 ① 라이선서의 필요와 조직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싱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돕고;
- ② 국내 클럽 대회 및 AFC 클럽 대회 참가에 필요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라이선서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요건에 동의하며;
- ③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클럽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 ④ 의사결정기구가 CLA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11.1.1.4 주요평가절차는 다음을 최소 주요 단계로 포함하여 구성된다:

- ①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 안내;

- ②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싱 서류 및 제출 마감일 배포;
- ③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싱 기준 준수를 증빙하기 위한 라이선싱 서류 제출;
- ④ CLA에 의한 제출서류의 평가 (라이선스 신청자 현장 실사 또는 감사 포함);
- ⑤ 의사결정기구에 의한 평가 및 결정;
- ⑥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과 통지;
- ⑦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제재 통지;
- ⑧ 국내 또는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승인 클럽 목록을 연맹 및 협회 이사회에 제출;
- ⑨ K리그 라이선스 및 AFC 라이선스 승인 클럽 목록을 AFC 사무국에 제출;
- ⑩ 전체 라이선싱 시즌 동안 라이선스 소지자에 대한 모니터링.

11.1.1.5 상기 주요평가절차에 대한 마감일은 라이선서가 명확히 설정하여, 클럽에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11.1.1.6 마감 및 제출 일자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CLA는 모든 제출일 및 마감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지정된 마감일 이내 모든 원본 서류, 증빙 서류 및 필요 증거자료를 CLA에 제출하는 것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의무이다. 제출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수신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마감기한 내 CLA가 양식,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1.1.1.7 CLA는 AFC 또는 FIB의 승인을 통해 라이선싱 사이클 중 지정된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라이선싱 사이클에 참가 중인 관계자들에게 적절하게 통보해야 한다.

11.1.2 주요평가절차는 크게 다음 3단계로 구분된다.

- ① 라이선스 신청
- ② 라이선싱 서류 검토 및 실사
- ③ 라이선싱 의사결정

11.2 라이선스 신청 (License Application)

11.2.1 8.2.1조에 명시된 클럽만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11.2.2 라이선스 신청은 철회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라이선싱 매니저의 판단을 통해 라이선스 신청서가 제출된 해당 연도 8월 31일 (또는 AFC 라이선스의 경우는 4월 30일) 이내 서면으로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11.2.3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는 별첨2 ‘K리그 클럽 라이선스 주요평가절차 일정’ 또는 별첨3 ‘AFC 클럽 라이선스 주요평가절차 일정’를 따른다.

11.2.4 CLA는 상기 주요평가절차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이를 즉시 클럽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클럽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2.5 CLA는 라이선스 신청을 희망하는 클럽에게 신청 안내와 제출서류 양식을 발송해야 한다.

11.2.6 라이선스 신청을 희망하는 클럽은 상기 주요평가절차 내 지정된 마감일에 맞추어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해당 최소 요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11.2.7 AFC CLAS 내 라이선싱 서류 제출 마감일

11.2.7.1 라이선서는 아래와 같이 각 기준별 두 가지 제출 마감일을 CLAS 내에 명시해야 한다.

① 제출 마감일 (Submission Deadline): CLAS 내 ‘submit by the clubs by 일자’의 형태로 표기

② 이행 마감일 (Fulfillment Deadline): CLAS 내 ‘fulfil by the clubs by 일자’의 형태로 표기

11.2.7.2 라이선스 신청자는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라이선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2.7.3 CLA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라이선싱 기준 ‘이행 마감일’ 2주 이내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라이선싱 매니저는 고유의 재량을 통해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제출된 불완전한 서류에 대한 재제출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2.7.4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 마감일’까지 라이선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 마감일’까지 완성된 라이선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해당 기준의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기한 미준수는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 라이선싱 결정 시 고려된다.

11.2.8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각 라이선스 서류 제출 마감일 연장을 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연장에 대한 사유서를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싱 매니저는 고유의 재량으로 마감일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클럽 라이선싱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FIB에 보고한 후 해당 마감일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1.2.9 라이선스 발급에 필요한 기준의 이행,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증빙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의무이며, 라이선싱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입증할 의무 및 책임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있다.

11.3 라이선스 서류 심사 (Examination of license documents)

11.3.1 라이선서는 규정과 매뉴얼을 기초로 평가방식을 정의해야 한다.

11.3.2 CLA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라이선싱 서류를 기초로 재량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다. CLA는 필요 시, 청문 절차를 실시하거나, 기 제출된 라이선싱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라이선싱 신청자의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CLA가 요청하는 대면조사 또는 경기장·훈련시설 실사를 거부할 수 없다.

11.3.3 CLA는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라이선스 평가 보고서 (License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Report)로 작성한다. 라이선스 평가 보고서는 라이선스 발급,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징계 필요성 여부, 징계 내용 등과 같은 평가의견을 포함하게 된다.

11.3.4 CLA는 라이선스 서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청문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1.4 라이선싱 결정 (Licensing Decision)

11.4.1 CLA는 라이선싱 결정을 위한 FIB 회의를 개최한다. FIB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라이선스 발급 여부 및 징계 부과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FIB는 라이선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와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4.2 CLA는 회의의 절차 및 개요를 기술하고, 아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회의록을 작성한다. FIB는 회의록 내 기재된 자신의 이름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11.4.2.1 위원장 성명 및 참석자/결석자

11.4.2.2 모든 참석자는 회의 시작 전 독립성 준수 신고

11.4.2.3 회의 일자 및 장소

11.5 FIB 결정 (FIB Decision)

11.5.1 FIB는 매년 10월 30일까지 K리그1/K리그2 라이선스에 대한 결정을, 5월 30일까지 AFC 라이선스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FIB는 라이선스 결정 및 사유가 명시된 문서 (이하 “FIB 결정문”)를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CLA는 연맹 및 협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11.5.2 FIB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

- ① 라이선스 발급 불승인 결정을 받은 라이선스 신청자
- ② 라이선스는 발급받았으나 징계를 받은 라이선스 신청자
- ③ 라이선스 취소 결정을 받은 라이선스 소지자
- ④ 라이선스 소지는 인정되나 별도의 징계를 받은 라이선스 소지자
- ⑤ 라이선스 발급 결정 시, 라이선싱 매니저
- ⑥ 라이선스 발급 및 징계 결정 시, 라이선싱 매니저
- ⑦ 라이선스 소지 승인에 대한 결정 시, 라이선싱 매니저
- ⑧ 라이선스 소지는 승인되나 별도의 징계 부과 결정 시, 라이선싱 매니저

11.5.3 재심청구인은 FIB 결정문을 수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CLA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재심청구인은 청구된 재심에 대해서 추가적인 신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11.5.4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1심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합당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② FIB의 결정이 편향된 경우
- ③ FIB가 검토하는 라이선싱 서류가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진 경우
- ④ 라이선스 신청자가 단 하나의 라이선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려진 FIB 결정과 관련하여, FIB 또는 CLA가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의 클럽

라이선싱 기준 충족 또는 불충족 여부와 관련된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가 부정확한 경우 등)

- 11.5.5 재심 청구 권한을 가진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마감일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11.2.8조를 준용한다. 재심 청구 기한 내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 FIB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 11.5.6 재심청구인은 재심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성일자 기입 및 서명 후 제출해야 한다.
- ① FIB 결정 중 재심 청구 사항
 - ② 재심 청구 사유
 - ③ 행정 절차상 하자
 - ④ 재심청구인의 재심 청구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는 근거자료
- 11.5.7 상기 내용을 미준수 시, 해당 재심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결정은 AB가 내린다.
- 11.5.8 재심청구인은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는다.
- 11.5.9 재심 청구 접수 시, CLA는 AB의 재심 검토를 준비하고, 라이선싱 매니저 (라이선스 신청자 재심 요청 시)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 (라이선싱 매니저 재심 요청시) 및 AB에게 이를 발송한다. 재심 통지서에는 FIB 결정문과 재심신청서를 포함해야 한다.

11.6 재심 (Appeal)

- 11.6.1 CLA는 재심이 신청되면, 즉시 청문 일자를 정하고 이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11.6.2 AB는 청문회에서 재심청구인에게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재심청구인을 대표하는 청문회 참석자의 신원은 확실해야 하며,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부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재심청구인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11.6.3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AB는 신원확인을 위해 자격증 및 위임장을 요청할 수 있다.
- 11.6.4 CLA는 청문회 이후 AB의 라이선싱 결정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AB는 라이선스 발급 여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제재 부과 여부 및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AB의 결정은 FIB의 결정보다 재심청구인에게 더욱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라이선싱 매니저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 상기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11.6.5 AB의 라이선싱 결정 회의 개최 시, FIB의 결정사항만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FIB에 제출한 라이선스 서류, 재심 신청서, FIB 및 AB의 청문회를 기초로 한다. 재심청구인은 AB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 11.6.6 CLA는 회의의 절차 및 개요를 기술하고, 아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회의록을 작성한다. AB는 회의록 내 기재된 자신의 이름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 해야 한다.
- 11.6.6.1 위원장 성명 및 참석자/결석자
 - 11.6.6.2 모든 참석자는 회의 시작 전 독립성 준수 신고
 - 11.6.6.3 회의 일자 및 장소
- 11.6.7 재심 청구는 청문 절차 실시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만일 재심이 철회되면, FIB 결정이

최종이 된다.

11.6.8 AB의 결정은 CLA, 연맹 및 협회 이사회에 보고되며, 회의 일자로부터 7일 이내 결정에 대한 결과와 사유를 명확히 기술한 AB 결정문을 재심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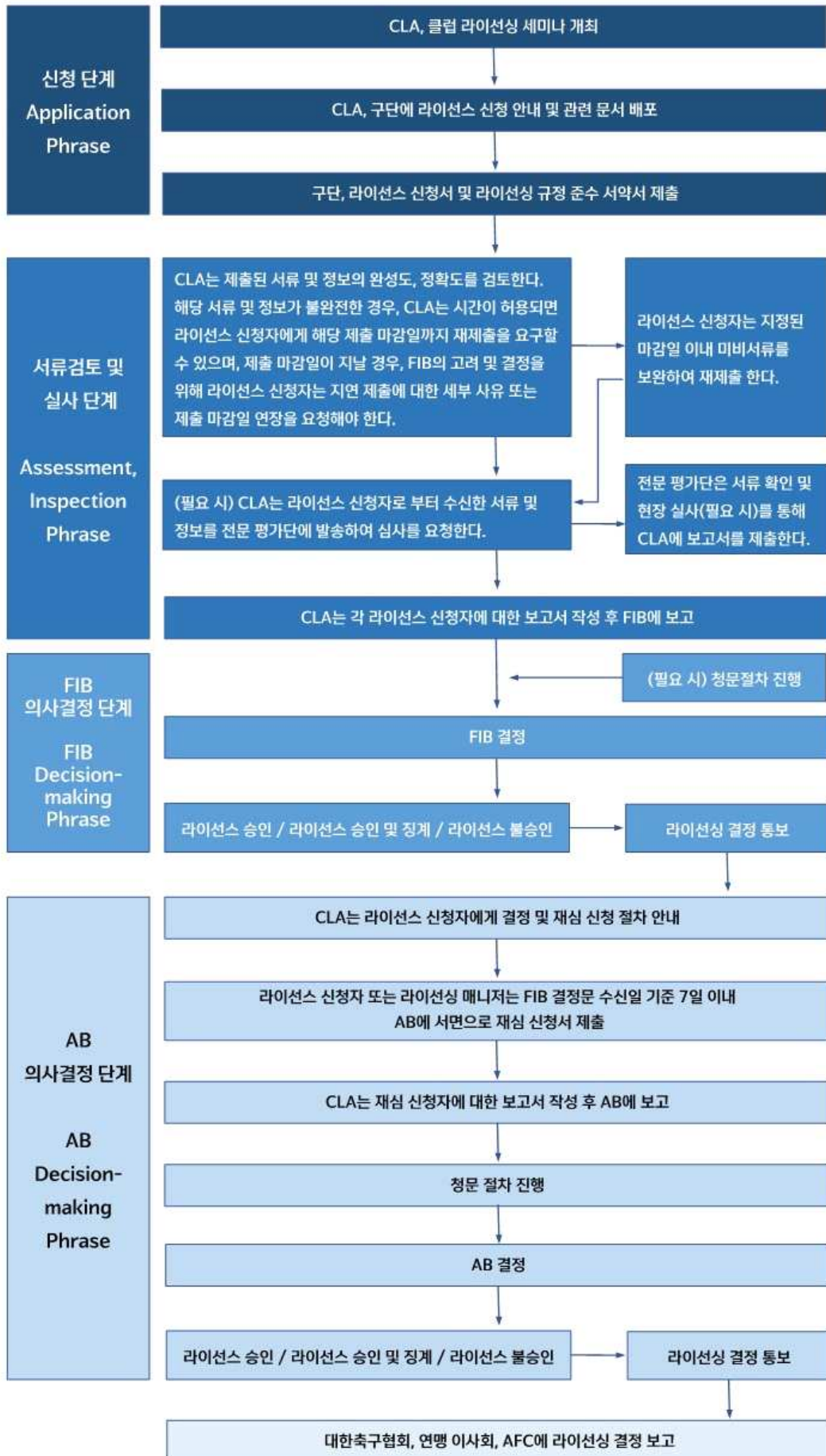
11.6.9 AB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권리를 갖는 자는 11.5.2조를 준용한다.

11.6.10 상기 조항에 의해 재심 청구 권리를 갖는 자는 AB 결정문을 수신한 날로부터 21일 이내 CAS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CAS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AB의 결정이 최종이 된다. AB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이 AB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는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CAS는 해당 효력의 중단을 명령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11.7 주요평가절차의 종료 (Conclusion of Core Process)

11.7.1 K리그1/K리그2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는 CLA가 연맹과 협회에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클럽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종료된다.

11.7.2 AFC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는 CLA가 연맹과 협회에 AFC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클럽의 명단을 통보해야 하며, AFC가 지정한 마감일 (최신 라이선스 적용 시즌의 바로 전 5월 31일)까지 AFC 사무국에 라이선싱 결정 목록 (List of licensing decisions)을 제출하며 종료된다.



12조 (Article 12):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Eligibility for AFC Club Competitions)

12.1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승인 (Eligibility for participating in AFC Club Competitions)

12.1.1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협회에 정식 등록
- ② 국내대회 성적에 따른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확보
- ③ 라이선스 및 AFC가 설정한 본 규정에 명시된 해당 기준을 기한 내 이행
- ④ AFC Stadium Regulations, AFC Stadium Lighting Guidelines을 충족하는 경기장 확보

12.1.2 규정 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FC 라이선스 신청자는 각 기준에 대한 모든 서류, 정보 및 증빙 자료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효한 번역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12.1.3 AFC 라이선스 심사 및 발급은 본 규정에 명시된 K리그 라이선스 기준 및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AFC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는 별첨3 ‘AFC 클럽 라이선스 주요평가절차 일정’을 따른다.

12.1.4 AFC는 AFC 클럽 대회의 참가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AFC 클럽 대회 참가와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12.1.5 AFC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과 본 규정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이 우선한다.

12.2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2년룰 (Two-Year rule for entering AFC Club Competitions)

12.2.1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해서, 라이선스 신청자의 협회 등록 및 연맹 회원 가입 기간은 라이선스 사이클 시작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이상 지속 되어야 한다.

12.2.2 상기 12.2.1조에 대한 기간 계산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아래 사항이 변경 시, 해당 기간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 된다.

12.1.2.1 법인형태; 또는

12.1.2.2 법인그룹구조; 또는

12.1.2.3 정체성 (본사, 사명 또는 색상); 또는

뿐만 아니라 아래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2.1.2.4 대회의 청렴성에 대한 훼손 시; 또는

12.1.2.5 라이선스 신청자의 대회 참가자격을 위해 경기 결과나 라이선스 승인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행위 시.

12.3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스 제도외 임시 승인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entering AFC club competitions)

12.3.1 국내대회 성적을 통해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을 확보한 클럽이 AFC 라이선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해당 AFC 라이선싱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거나 상응하지 않는 라이선싱 절차를 진행한 경우, 라이선서는 클럽을 대신하여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에 따라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2.3.2 AFC 라이선스 임시 승인 신청의 세부 사항은 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제15조를 참조한다.

12.4 AFC 라이선스 취소 시 절차 (Withdrawal process of AFC License)

12.4.1 연맹은 AFC 라이선스 소지자의 라이선스 취소가 예상될 경우 이를 AFC에 통보해야 한다.

12.4.2 AFC 클럽 대회를 마친 클럽의 AFC 라이선스가 취소될 경우, 클럽의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박탈 관련 결정은 AFC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12.4.3 상기 조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AFC Entry Manual for AFC Club Competitions 및 AFC 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 AFC Entry Control Body 에 의한다.

12.4.4 AFC 라이선스와 관련해 본 규정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 향후 AFC 클럽 대회 참가자격 박탈 등에 대한 결정은 관련 AFC 규정에 의거하여 AFC가 결정한다.

13조 (Article 13): 일반 (Final Provisions)

13.1 실행 조항 (Implementing Provisions)

13.1.1 연맹은 본 규정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별도의 지시서 (매뉴얼) 형태로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13.1.2 연맹은 필요 시 본 규정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해당 개정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13.2 준수성 감사 (Compliance Audits)

13.2.1 라이선서는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준수성 감사를 항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2.2 AFC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AFC 및/또는 AFC가 지정한 기관은 라이선서,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준수성 감사를 항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2.3 준수성 감사는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가 본 규정 내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라이선서의 최종 결정 시기에 라이선스가 올바르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라이선스 소지자가 준수성 감사 실시에 비협조적인 경우 라이선서 또는 AFC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해당 사법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13.2.4 CLA는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사전 동의 없이 클럽 사무국 또는 경기장을 방문하여 준수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라이선싱 서류와 대조, 인사 및 행정기준 내 등록된 클럽 스태프와 인터뷰 및 클럽 라이선싱 요구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3.2.5 준수성 감사를 통해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가 본 규정 또는 AFC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는 사안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3.3 명문화 되지 않는 사항 (Matters not provided for)

13.3.1 K리그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종 결정권을 갖는 연맹 이사회가 결정하며, 연맹 정관, 규정 및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한다. 해당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3.3.2 본 규정은 협회, 연맹의 정관 및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시행된다.

13.3.3 협회 및 연맹 규정과 본 규정 사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13.3.4 AFC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FC가 최종결정하며, AFC 정관, 규정 및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한다.

13.4 발전 (Development)

13.4.1 클럽 라이선싱 시스템은 지속적인 개선을 규정화하기 위해 고안된 점진적인 제도이다.

13.4.2 해당 클럽 라이선싱 기구는 내부 심사를 통해 현재 규정 및/또는 매뉴얼 내 기준 검토 및 개정을 연맹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4.3 본 규정 및/또는 매뉴얼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 시, 수시로 재검토 및 개정될 수 있다.

13.5 언어 (Language)

13.5.1 본 규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만일 국문판과 영문판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문판이 우선한다.

13.6 불가항력 사유 발생 (In case of Force majeure)

13.6.1 자연재해, 전쟁, 테러, 기타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등의 사유 (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규정 14조부터 20조에 명시된 라이선스 기준을 K리그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충족할 수 없는 경우, FIB 또는 AB는 규정 14조부터 20조에 명시된 일부 라이선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6.2 상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 14조부터 20조에 명시된 라이선스 기준을 AFC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충족할 수 없는 경우, AFC의 결정이 상기 조항보다 우선한다.

13.7 별첨 (Annexes)

본 규정 내 모든 별첨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구성된다.

13.8 시행 (Enforcement)

13.8.1 본 규정은 2023년 12월 4일 연맹 이사회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가진다.

13.8.2 본 규정은 2025시즌 K리그 및 2024/25 AFC 클럽 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발급부터 적용된다.

14조 (Article 14):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14.1 스포츠 기준의 목적 (The objectives of Sporting Criteria)

- 14.1.1 우수한 축구선수 양성 및 지속적인 발굴
- 14.1.2 명확한 진로의 연간 선수 육성 시스템 수립
- 14.1.3 클럽 고유의 장점을 특화시킨 유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고안 및 실행
- 14.1.4 축구 관련 훈련 및 이론 교육을 통한 엘리트 선수의 기술 훈련 지원
- 14.1.5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의료 지원 제공
- 14.1.6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 및 관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

14.2 스포츠 기준의 등급 및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된다.

| S.0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선수 육성 프로그램 Youth Development Programs (YDP) | A | A | A | A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서로부터 승인받은 문서화 된 선수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라이선서는 이를 승인함에 있어 해당 선수 육성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해야 하며, 유소년팀의 훈련장 및 경기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선수 육성 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의 내용 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표, 유소년 팀의 경기 철학 및 유소년 육성 철학;
 - 2) 유소년 육성 부문 조직구성 (조직도, 관계 기구, 라이선스 신청자와의 관계, 해당 유소년 팀 등);
 - 3) 최소자격요건을 갖춘 인적자원 구성 (기술, 의료, 행정 부문 등);
 - 4) 유소년 육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시설 (훈련 및 경기 시설 등);
 - 5) 재정 지원 (가용 예산, 라이선스 신청자, 선수 및 지역사회 후원 등);
 - 6) 각 연령대별 축구 교육 프로그램 (심리, 기술, 전술 및 체력);
 - 7) 교육 프로그램 (경기규칙, 도핑방지, 부정방지, 인종차별);
 - 8) 유소년 선수에 대한 의료지원 (건강검진 포함);
 - 9) 프로그램 내 개별 선수 성과 평가;
 - 10) 평가 결과 및 목표 성취도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전달 절차;
 - 11) 프로그램 유효 연한 (최소 3년 이상 최대 7년 이내).
3.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1)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유소년 선수들이 국내법에 따라 의무 교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내 참가하는 유소년 선수들이 그들의 비(非)축구 교육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S.0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p>유소년 팀 Youth Teams</p>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법인,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다른 법인 또는 법인 산하 클럽 내 소속된 유소년 클럽을 최소한 아래와 같이 보유해야 한다. 4) 항에 명시된 팀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축구 교실 또는 클리닉으로 대체될 수 있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각 팀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p> <p>1) 18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8 팀”); 2) 15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5 팀”); 3) 12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2 팀”); 4) 10세 이하로 구성된 유소년 팀 (이하 “U10 팀”).</p> <p>2. 프로클럽은 상기 제1조의 팀들을 매년 협회 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그 증빙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p> <p>3. 만 10세 이하의 팀을 제외한 각 유소년 팀은 협회가 승인하는 전국, 권역 또는 지역 단위의 공식 대회 또는 축구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p> <p>K리그 기준 – 추가 요구사항</p> <p>4. 신생 프로클럽의 경우, 프로 가입 1년차에는 상기 제1조 중 1개 연령대 팀만을 운영이 가능하나, 대신 다음 연도의 전 연령대 유소년 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 <p>5. 제4조를 적용받은 프로클럽은 프로 가입 2년차에는 반드시 상기 제1조의 유소년 팀을 모두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 | | | |

| S.0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p>선수에 대한 의료지원 Medical Care of Players</p>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에게 종합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지원 내역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p>1) 1군 선수단에 등록된 모든 선수에 대한 연맹 의무위원회가 정한 ‘K리그 메디컬 체크 리스트’ 또는 ‘AFC Pre-Competition Medical Assessment (PCMA)’ (심혈관 검사 포함); 2) 만 12세 이상의 모든 선수에 대한 연간 건강검진; 3) 계약된 선수에 대한 종합의료보험 보장; 4) 유소년 클럽 전담의 연맹이 정한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학과를 재학/졸업한 유소년 클럽 전담 의무 트레이너 연간 2명 등록.</p> | | | | |

| S.04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계약 체결 코칭스태프에 대한 의무지원서비스 Medical Care of Coaching Staff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에 등록된 모든 코칭스태프에게 종합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클럽의 1군 선수단의 기술 부분에 관여하는 감독 및 코치 등의 코칭스태프에 대한 연맹 의무위원회가 정한 'K리그 메디컬 체크 리스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종합 건강검진; 2) 계약된 코칭스태프에 대한 종합의료보험 보장. <p>2. 본 기준의 목적을 위해, '코칭스태프'라는 용어는 다음 사람들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코치, GK코치 및 피지컬(또는 피트니스) 코치 등. | | | | |

| S.05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교육 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s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최소 1군 선수 및 모든 코칭스태프가 아래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포츠 청렴성 (부정방지); 2) IFAB 경기규칙; 3) 도핑방지; 4) AFC / 연맹이 요구하는 기타 사안. <p>2. 본 과정 또는 행사는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시즌의 개막 전 연 단위로 라이선스 신청자, 협회, 연맹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연맹 공동 또는 기타 제 3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p> | | | | |

| S.06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선수등록 Registration of Players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의 만 10세 이상의 유소년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FIFA RSTP의 관련 조항에 따라 협회 및 산하 리그에 등록되어야 한다.</p> | | | | |

| S.07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여자 축구 Women's Football | C | C | C | C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여자 축구의 발전, 프로화 및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 활동을 실행하여 여자 축구를 지원해야 한다:
- 1) 해당 법인 또는 보고 범위 내 소속된 다른 법인이 운영 중인 여자 축구팀을 보유하고, 협회가 승인하는 전국, 권역 또는 지역 단위 공식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 2) 산하 여자 축구 클럽을 지원해야 한다;
 - 3)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S.08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클럽 유스 아카데미 Club Youth Academy | B | C | C | C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Elite Youth Scheme에 기술된 필요한 기반시설 및 시설물을 갖춘 클럽 유스 아카데미를 설립해야 한다.

15조 (Article 15):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15.1 시설 기준의 목적 (The objectives of Infrastructure Criteria)

15.1.1 라이선스 신청자는 각 대회의 홈경기를 개최하는 안전하고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보유해야 한다.

15.1.2 라이선스 신청자는 선수의 기술적 실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15.1.3 시설 기준의 등급과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된다.

| I.0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승인된 경기장 Approved Stadium(s) | A | A | A | A |
| <p>K리그 기준</p>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K리그 경기개최가 가능한 경기장을 보유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또는 경기장 소유주와 체결한 향후 경기장 사용에 대한 서면계약서 또는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 계약서 또는 확약서는 다음 시즌 K리그 경기개최를 위해 경기장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p>2. 경기장은 연맹 '경기' 규정 및 K리그 대회요강에 명시된 요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3. 경기장은 라이선스 신청자가 연고지로 승인받은 지역 내 위치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공식경기 과반 이상을 본 경기장에서 개최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p> <p>AFC 기준</p>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클럽 대회 개최가 가능한 경기장을 보유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을 가진 경기장; 또는 경기장 소유주와 향후 사용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계약서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대회 참가자격을 갖춘 다음 시즌의 AFC 클럽 대회의 홈경기 개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p>2. 경기장은 다음 규정을 명확히 참조하여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FC 경기장 규정; 그리고 해당 AFC 클럽 대회 규정, AFC 대회 운영 매뉴얼 (AFC Competition Operations Manual). <p>3. 경기장은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연고지와 같은 도시에 위치해야 한다. 만일 경기장이 라이선스 소지자의 연고 도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출되어야 한다.</p> <p>4. AFC는 해당 경기장에서 AFC 클럽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p> | | | | |

| I.0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경기장 - 안전 인증서 Stadium – Safety Certification | A | A | A | A |

K리그 기준

1. 경기장은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인증서는 국내/지방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안전 관련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만일 해당 법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서는 경기장 인증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하며, 적절한 기관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예, 지역 안전 및 보안 당국, 지역 병원, 소방서, 경찰 등)
2. 인증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 경기장 구조의 안전 상황 및 건축물의 적합성;
 - 2)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의 안전/보안 규정에 대한 준수성 확인 문구;
 - 3) 경기장 전체 수용인원에 대한 승인 (개별석, 테라스석 및 전체 숫자);
 - 4) 해당 국내법에 따른 비상시 전체 경기장을 비울 수 있는 승인된 대피 계획;
 - 5) 가능 대피 경로를 보여주는 색상으로 표시된 층별 계획도는 경기장 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6) 티켓 발권 시스템, 입장 관중 스크리닝 (게이트 보안검색 등), 동선 분리 계획, 관중 분산 계획, AED 설치 위치도를 포함한 의료지원 및 화재, 정전 및 기타 응급상황에 대비한 조치 계획 등 경기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의 안전 계획을 확보할 목적의 승인된 안전 계획.
3. 경기장은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AFC 기준 – 추가 요구사항

3. 인증서는 AFC 안전 규정 (AFC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관계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인증서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라이선싱 시즌 전체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 I.0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경기장 - 승인된 대피 계획서 Stadium – Approved Evacuation Plan | A | A | A | A |
| <p>1. 관계기관 (예, 안전 및 보안 당국, 유관 행정기관 또는 다른 인증된 기관 등)은 해당 법규에 따라 비상상황에서 경기장 내부 전체로부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대피계획을 승인한다.</p> <p>2.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라이선서는 적절한 민간기구 (예, 지역 안전 및 보안 당국, 지역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 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피시간 및 승인가관을 포함한 대피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p> <p>3. 가능 대피 경로를 보여주는 색상으로 표시된 층별 계획도는 경기장 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p> <p>4. 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p> <p>5. 안전 및 보안담당관, 안내 요원 및 클럽과 경기장 시설 담당자는 대피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p> | | | | |

| I.04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이용 가능한 훈련시설 Training Facilities – Availability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의 1군 선수단은 연중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p> <p>1) 자체 훈련시설의 보유; 또는</p> <p>2) 훈련시설 소유주와의 서면계약서 제출.</p> <p>2. 라이선스 기간 중 라이선스 신청자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까지 고려하여 산하의 모든 팀이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 | | | |

| I.05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 - 최소 기반시설 Training Facilities for Player Development – Minimum Infrastructure | A | B | B | B |
| <p>1.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 훈련시설은 최소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p> <p>1) 실외 훈련시설;</p> <p>2) 실내 훈련시설;</p> <p>3) 선수대기실;</p> <p>4) 의료실 또는 훈련장 내 즉각적인 응급처치 시설.</p> | | | | |

| I.06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경기장 - 안전 수칙 Stadium – Ground Rules | A | B | B | B |
| <p>1. 경기장 안전 수칙은 관중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p> <p>본 규정은 최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장 권리; 2) 경기 취소 및 연기; 3) 그라운드 난입, 이물질 투척, 저속한 또는 과도한 욕설, 인종차별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기술; 4) 흡연, 음주, 화약류 사용, 현수막 등과 관련된 제한 사항; 5) 좌석 규칙; 6) 경기장에서 퇴장 사유. | | | | |

16조 (Article 16):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16.1 인사 및 행정 기준의 목적 (The objectives of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16.1.1 라이선스 신청자는 전문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6.1.2 라이선스 신청자는 특정 분야에 있어 전문지식, 경력 및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16.1.3 라이선스 신청자의 1군팀 뿐만 아니라 나머지 팀들의 소속 선수들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로부터 훈련받고,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16.1.4 인사 및 행정 기준의 등급과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된다.

| P.0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클럽 사무국 Club Secretariat | A | A | A | A |

- 라이선스 신청자는 행정 업무 진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충분한 공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 라이선스 신청자는 일일 업무 운영에 필요에 따라 충분한 인원의 숙련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 사무실은 연맹 및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등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최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서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사무실 위치 (복수의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경우, 전체 목록 제출)
 - 사무실 소유권 (소유 또는 임대)
 - 사무국 조직도
 - 임직원 명단

K리그1 기준

5. 라이선스 신청자는 원활한 행정 업무 진행을 위해 클럽 사무국은 최소 다음 인원 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라이선싱 사이클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사무국 인원 수 | 20명 이상 | 22명 이상 | 24명 이상 | 26명 이상 | 28명 이상 | 30명 이상 |

6. 상기 5항의 표에 명시된 조직의 최소 구성 인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라이선스 신청자는 적기에 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총원계획(안)을 제출하여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P.0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대표이사 / CEO Representative Director / CEO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일일 운영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또는 최고경영자 (CEO)를 고용해야 한다. (클럽 운영 관련 업무)</p> <p>2. 해당 임명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 (예,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p> | | | | |

| P.0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재무담당관 Finance Officer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재무/회계 분야 및 재정 건전화 제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재무담당관을 고용해야 한다.</p> <p>2. 재무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회계, 재무 또는 경제, 경영 등과 같은 관련 분야 학위; 또는</p> <p>2) 다음 국가공인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또는</p> <p>① 공인회계사</p> <p>② 세무사</p> <p>③ 전산 세무 회계</p> <p>④ 재경 관리사</p> <p>⑤ 회계관리</p> <p>⑥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재무/회계 관련 자격증</p> <p>3) 연맹이 개최 또는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p>① 최소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p> <p>② 연맹이 발급한 수료증 또는 '자격인정서' 소지</p> <p>4) 상기 3)항의 자격 조건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폐지한다.</p> | | | | |

| P.04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안전 및 보안담당관 Safety and Security Officer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안전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안전 및 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p> <p>2. 안전 및 보안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법에 따른 경찰 공무원증 또는 국가공인 경비 (경호) 관련 자격증 (예, 경비지도사); 또는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발급한 안전 및 보안 관련 교육과정수료증; 또는 3) 연맹이 개최 또는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소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 ② 연맹이 발급한 수료증 또는 ‘자격인정서’ 소지 <p>3. 안전 및 보안담당관은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p> | | | | |

| P.05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언론담당관 Media Officer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언론 응대 및 홍보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언론담당관을 고용해야 한다.</p> <p>2. 언론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언론학 분야 학위; 또는 2) 연맹으로부터 인정된 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언론담당자 교육과정 수료; 또는 3) 연맹이 개최 또는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소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 ② 연맹이 발급한 수료증 또는 ‘자격인정서’ 소지 <p>3. 언론담당관은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p> | | | | |

| P.06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클럽 라이선싱 담당관 Club Licensing Officer | A | A | A | A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K리그 및 AFC 클럽 대회 라이선스 신청 및 준비에 대한 책임을 갖는 클럽 라이선싱 담당관을 고용해야 한다. 2. 클럽 라이선싱 담당관은 CLA와 업무연락을 담당하며, 라이선서가 개최하는 클럽 라이선싱 세미나/워크샵에 참석해야 한다. 3. 클럽 라이선싱 담당관은 아래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1) 주요평가절차 일정에 따른 라이선싱 서류 제출 계획 수립; 2) 라이선싱 서류 제출 전 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 3) 클럽 라이선싱 제도에 필요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관련 부서의 행정적 협조 지원. 4. 클럽 라이선싱 담당관은 영어 말하기와 쓰기 모두 유창해야 한다. 5. 클럽 라이선싱 담당관은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 | | |

| P.07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팀 주치의 Team Doctor | A | A | A | A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경기 및 훈련 중 의료지원 및 도핑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주치의를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2. 주치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면허)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3. 주치위는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 | | |

| P.08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훈련 및 경기 중 1군 선수의 치료 및 마사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 물리치료사를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p> <p>2.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물리치료사 자격(면허) 증명서 소지자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연맹 의무위원회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p> <p>3. 물리치료사는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p> | | | | |

| P.09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1군 감독 Head Coach of First Team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의 축구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고용해야 한다.</p> <p>2. 1군 감독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및/또는 AFC Competition Operations Manual 내 명시된 감독 최소자격 기준 (Minimum Coach Education Requirement, MCER)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p> <p>① 현재 AFC 클럽 대회의 MCER은 AFC ‘Pro’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AFC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p> <p>② 현재 K리그의 MCER은 AFC ‘Pro’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협회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p> <p>2) 1군팀 감독이 상기 1)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인증서 (RECC)’를 소지해야 한다; 또는</p> <p>3) 1)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 중이어야 한다.</p> <p>3. 감독은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p> | | | | |

| P.10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1군 코치 Assistant Coach of First Team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의 축구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지원하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코치를 고용해야 한다.</p> <p>2. 1군 코치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및/또는 AFC Competition Operations Manual 내 명시된 감독 최소 자격기준 (Minimum Coach Education Requirement, MCER)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p> <p>① 현재 AFC 클럽 대회 MCER은 AFC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AFC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p> <p>② 현재 K리그의 MCER은 AFC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협회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p> <p>2) 1군팀 코치가 상기 1)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인증서 (RECC)’를 소지해야 한다.; 또는</p> <p>3) 1)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 중이어야 한다.</p> <p>3. 1군 코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p> | | | | |

| P.1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 (유스 아카데미 디렉터) Head of Youth Development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YDP)을 포함해 유소년 육성 분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를 고용해야 한다.</p> <p>2.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국내 또는 해외 협회의 등록팀에서 3년 이상 감독 또는 유스 아카데미 디렉터로서 활동 경력 보유;</p> <p>2) AFC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p> <p>① 상기 2)에 정의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중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자도 인정;</p> <p>3) 구체적인 유소년 지도 경력 및 유소년 선수의 지도 및 관리와 관련된 추가 증명서/자격증;</p> <p>4)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활동, 역할 및 책임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뛰어난 관리 및 행정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p> <p>3.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p> <p>4.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는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p> | | | | |

| P.1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유소년 지도자 Youth Coaches | A | A | A | A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S.02에 명시된 유소년 팀의 축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춘 유소년 지도자를 임명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신청자는 협회 '지도자 교육규정'에 명시된 지도자 최소 자격 기준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연령대별 유소년 팀에 임명해야 한다. 3. 임명된 유소년 지도자 중 최소 2명 이상은 지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AFC 'B'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상응하는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2) 구체적인 유소년 지도 경력 및 유소년 선수의 지도 및 관리와 관련된 추가 증명서/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3)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엘리트 유소년 선수의 육성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4. 나머지 유소년 지도자는 협회가 규정한 최소 지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AFC/KFA "C급" 지도자 자격증 이상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5. 유소년 지도자는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 | | | | |

| P.1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안전 및 보안 준비 - 진행요원 배치 Safety and Security Organization - Stewarding | A | A | A | A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홈경기 시, 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진행요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안내 요원의 고용; 또는 2) 경기장 소유자 또는 외부경호업체와 안내 요원 제공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3) 라이선스 신청자는 매 홈경기마다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 | | | |

| P.14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권리, 책임 및 의무 Right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 A | A | A | A |
| 1. 본 규정 내 서술된 라이선스 신청자의 직원들에 대한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은 직무명세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P.15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라이선싱 시즌 중 직무 대체 Duty of Replacement during the Licensing Season | A | A | A | A |
| 1. 라이선싱 시즌 중 본 규정 내 적절한 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공백이 생긴 경우, 라이선스 소지자는 최대 60일 이내에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이를 인계받아야 한다. 2. 만일 일부 직무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라이선서는 해당 인원이 의학적으로 여전히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60일을 연장해줄 수 있다. 3. 공석의 발생 및 대체는 해당 상황 발생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라이선서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K리그 기준 - 추가 요구사항 4. 'P.09 1군 감독' 직무의 공백 발생과 관련하여, 직무 대체 기간 60일이 만료한 시점에 클럽이 현재 참가 중인 시즌의 K리그 잔여 경기 수가 5경기 이하인 경우(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제외), 라이선서는 클럽이 자격요건을 갖춘 선임 '1군 감독'을 연내에 임명하는 조건으로 직무 대체 기간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클럽이 공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초과 된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1군 감독'을 등록하지 않고 잔여 K리그 경기에 출전할 경우, 해당 클럽에게 경기당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 | | | |

| P.16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법률자문 변호사 Legal Advisor | A | B | B | B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제반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 처리에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법률자문 변호사를 임명해야 한다. 2. 법률자문 변호사는 필요한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 | |

| P.17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클럽 테크니컬 디렉터 Club Technical Director | B | B | B | B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 테크니컬 디렉터를 고용해야 한다.
2. 클럽 테크니컬 디렉터는 최소 AFC 'A' 지도자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프로클럽 등에서의 폭넓은 선수 및 업무 경력 또는 선수, 지도자, 관리직 또는 고문 등으로서 클럽의 구성원으로 오랜 시간 근무한 경력과 같은 추가 자격 사항이 요구된다.
3. 클럽 테크니컬 디렉터는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갖춘 자로, 비전을 제시하고 클럽의 기술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4. 클럽 테크니컬 디렉터는 최소한 다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 1) 클럽 철학의 수립 및 실행;
 - 2)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구조 및 프로그램 마련;
 - 3) 기술 (기량) 기준 유지 및 강화 확립;
 - 4) 모든 기술 및 발전 프로그램의 평가 및 관찰;
 - 5) 우수 선수의 스카우팅;
 - 6) 클럽의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 7) 지도자 및 선수 스카우터의 채용 및 관리;
 - 8) 경기분석과정의 관리.
5. 클럽 테크니컬 디렉터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
6. 클럽 테크니컬 디렉터는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P.18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1군 골키퍼코치 Goalkeeper Coach of First Team | A | B | B | B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격을 갖춘 1군 골키퍼 코치를 고용해야 한다.
2. 1군 골키퍼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및/또는 AFC Competition Operations Manual 내 명시된 감독 최소 자격 기준 (Minimum Coach Education Requirement, MCER)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 ① 현재 AFC 클럽 대회의 MCER은 AFC ‘GK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AFC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
 - ② 현재 K리그의 MCER은 AFC ‘GK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협회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
 - 2) 1군 골키퍼 코치가 상기 1)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인증서 (RECC)’를 소지해야 한다.; 또는
 - 3) 1)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 중이어야 한다.
3. 1군 골키퍼코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

| P.19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1군 피트니스 코치 Fitness coach of First Team | B | B | B | B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격을 갖춘 1군 피트니스 코치를 고용해야 한다.

2. 1군 피트니스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및/또는 AFC Competition Operations Manual 내 명시된 감독 최소자격 기준 (Minimum Coach Education Requirement, MCER)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 ① 현재 AFC 클럽 대회의 MCER은 AFC ‘Fitness Level 2’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AFC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
 - ② 현재 K리그의 MCER은 AFC ‘Fitness Level 1’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협회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
 - ③ 2027년부터 K리그의 MCER은 AFC ‘Fitness Level 2’ 지도자 자격증 또는 이와 상응하는 자격증으로 협회로부터 인정 및 승인된 자격증
- 2) 1군 피트니스 코치가 상기 1)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인증서 (RECC)’를 소지해야 한다.; 또는
- 3) 1)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 중이어야 한다.

3. 1군 피트니스 코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

| P.20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유소년 팀 골키퍼코치 Goalkeeper Coach of Youth Teams | C | C | C | C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격을 갖춘 유소년 팀 골키퍼 코치를 임명해야 한다.

2. 유소년팀 골키퍼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명시된 최소 자격 기준 (Minimum Coach Education Requirement, MCER)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 2) 유소년 팀 골키퍼 코치가 상기 1)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인증서 (RECC)’를 소지해야 한다.; 또는
- 3) 1)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 중이어야 한다.

3. 유소년 팀 골키퍼코치는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임명되어야 한다.

| P.2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사회공헌 담당관 Football Social Responsibility Officer | C | C | C | C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사회공헌 담당관을 고용해야 한다. 2. 사회공헌 담당관은 연맹이 수립한 사회공헌활동 정책과 방안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맹이 개최하는 관련 세미나/워크샵에 참석해야 한다. 3. 사회공헌 담당관은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 | | |

| P.2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어린이 보호 담당관 Child Safeguarding Officer | C | C | C | C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개최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발생 가능한 위험 및 잠재적인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책임을 갖는 어린이 보호 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2. 어린이 보호 담당관은 연맹이 개최 또는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3. 어린이 보호 담당관은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 | | |

| P.2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마케팅 담당관 Marketing Officer | C | C | C | C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마케팅 전략 수립 뿐만 아니라 마케팅 및 수익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는 마케팅 담당관을 고용해야 한다. 2. 마케팅 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학, 마케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2) 최근 5년 이내 최소 2년 이상의 스포츠 마케팅 실무 경력 보유자; 또는 3) 연맹이 개최 또는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소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 ② 연맹이 발급한 수료증 또는 '자격인정서' 소지. 3. 마케팅 담당관은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 | | |

17조 (Article 17): 법무 기준 (Legal Criteria)

| L.0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AFC 클럽 대회 및 K리그 참가에 대한 서약서 Declaration in respect of the participation in K LEAGUE and AFC Club Competitions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 규칙, 규정 및 결정 그리고 AFC 정관 내 관련 조항에 의거 스위스 로잔 소재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의 관할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인지한다; 2) 국제적인 차원, 특히 FIFA 및 AFC와 연루된 분쟁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 (스위스 로잔 소재)의 독점 관할권을 인정한다; 3) FIFA, AFC, 협회 및 연맹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의 이의신청은 금지됨을 인지한다; 4) 국내대회의 경우, 협회로부터 승인 및 인정받은 대회를 출전한다 (예, K리그, FA컵 등); 5) 국제대회의 경우, AFC 및 FIFA로부터 승인 및 인정받은 대회를 출전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조항은 친선경기와는 무관하다; 6)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의 조항 및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따르는 것을 동의한다; 7) 보고 범위는 본 규정 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단체의 본 서약서에 대한 준수 및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8) 모든 라이선싱 제출서류는 온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9) 라이선서 및 AFC는 서류 심사 및 정보 수집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며, 재심 절차 진행 시, 국내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설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10) 본 규정 13.2조에 의거 AFC와 연맹은 국내 수준에서 준수성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11) 라이선싱 제출 마감일 이후 제출된 라이선싱 서류상에 유의적인 변화나 클럽의 재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즉시 라이선서에게 통보한다. <p>2. 본 서약서는 라이선서의 해당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에 공인된 서명을 통해 작성 완료되어야 한다.</p> | | | | |

| L.0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법적 서류 Legal Documents | A | A | A | A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현재 회사 규약, 사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회사 관리에 대한 문서의 사본;
- 2) 라이선스 신청자가 최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법인'임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 ① 등록된 법인명;
 - ② 클럽명;
 - ③ 본사 주소;
 - ④ 법인 종류;
 - ⑤ 공인된 서명자 명단;
 - ⑥ 서명 형태 (개별서명, 공동서명 등);
- 3) (해당 시) 협회 산하 대회참가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신청자와 관련 구성 단체간 협약서.

| L.0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클럽의 소유권 및 지배권 Ownership and Control of Clubs | A | A | A | A |

1. 국내 경기 및 대회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소유권 및 지배권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윤리적 및 스포츠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 동일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증권이나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② 동일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 ③ 동일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경기 결과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는 행위;
- ④ 동일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경기 결과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국내 대회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국내 대회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와 관계되는 어느 누구도 라이선스 신청자와 동일한 국내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및/또는 경기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동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3)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국내 대회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은 동일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참가 클럽에 대한 통제권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과 관련해 통제권 또는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① 해당 클럽의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 여부;
- ② 해당 클럽의 임직원 또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다수를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여부;
- ③ 해당 클럽의 다른 주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주주로서 주주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단독으로 통제하는 권한을 보유 여부;
- ④ 해당 클럽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소유 구조와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상기 명시된 기준을 준수함을 확인하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가 상기 기준 중 하나라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약서(증거 포함)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본 서약서는 라이선서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 공인된 서명을 통해 작성 완료되어야 한다.

| L.04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법적 그룹 구조 및 최종통제기구 Legal Group Structure and Ultimate Controlling Party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스 신청서 제출의 법정 마감일 전에 법적 그룹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경영진이 정식으로 승인한 차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서에게 차트를 제출한 날짜와 법정 마감일 사이 기간 중 법적 그룹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을 시, 이를 라이선서에게 통보해야 한다.</p> <p>2. 해당 서류는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스 신청자, 라이선스 신청자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2) 라이선스 신청자의 자회사, 자회사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3) 라이선스 신청자의 관계기업, 관계기업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4) 라이선스 신청자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체, 최종적으로 최종통제기구까지 포함; 5) 라이선스 신청자의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 중이거나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 중인 기구 6)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 7) 1)에서 6)까지 정의된 기구 또는 해당 주요 경영진이 보유한 소유권의 지분, 의결권, 재정적·운영적 정책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력이나 연관성을 가지는 기타 축구 클럽; 8) 규정 18.1조에 정의된 보고 범위는 본 문서 내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한다. <p>3.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이선서는 위에 나열된 목록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 제공 제출을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 자회사, 최종통제기구의 관계기업, 직접통제기구 관련 정보)</p> <p>4. 법적 그룹 구조 내 포함된 모든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명; 2) 법인형태; 3) 법인의 주요 활동; 4) 소유권 지분의 비율 (소유권과 의결권 보유 비율이 다를 시, 의결권 보유 비율 포함). <p>5.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자회사와 협회 내 등록 회원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자본; 2) 총 자산; 3) 총 수익; 4) 총 자본. <p>6.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라이선서는 L.03에 의거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서약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04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라이선스 신청자는 L.04에 따라 법적 그룹 구조에 대한 정보를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때, L.03에 대한 서약서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준수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p> | | | | |

| L.05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프로선수와의 서면계약서 Written Contract with Professional Players | A | A | A | A |
| 1. 라이선스 신청자의 프로선수는 'FIFA Regulations for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내 관련 조항 (또는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와 체결한 유효한 양해각서)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 내에는 관련 국내법, FIFA, AFC, 협회 및 연맹이 요구하는 모든 주요 조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L.06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선수단 운영 규정 및 징계 절차 Disciplinary Procedure and Code of Conduct for Players and Officials | A | B | B | B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관련 국내법,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에 따라 선수 및 스태프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행동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2. 행동 규범은 행동 규범, 클럽 규칙, 클럽 규정 위반 시, 법적으로 유효한 징계 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클럽 결정으로 기소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 | | | |

18조 (Article 18):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18.1 재무보고실체 및 보고 범위 (Reporting entity and Reporting perimeter)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보고 범위를 결정하여 라이선서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재무정보 (단일법인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 관점에서 관련된 법인 또는 법인의 조합에 대한 정보가 해당된다.
- 2) 보고 범위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① 라이선스 신청자, 라이선스 신청자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 ② 라이선스 신청자의 자회사, 자회사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 ③ 아래 3) ③부터 ⑩에 정의된 축구 관련 활동에 대한 수익 창출, 서비스 시행, 비용을 발생시키는 법인 그룹에 포함된 기타 법인;
 - ④ 법인 그룹 포함 여부와 관련 없이 아래 3) ①부터 ②에 정의된 축구 관련 활동에 대한 수익 창출, 서비스 시행,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타 법인.
- 3) 축구 관련 활동은 아래를 포함한다:
 - ① 계약적 또는 법적 의무에 따라 피고용인으로 간주 되는 모든 형태의 급여 지불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계약 직원 (F.04에 정의);
 - ② 선수 영입 및 타 팀 이적 (임대 포함);
 - ③ 티켓 판매;
 - ④ 스폰서십 및 광고;
 - ⑤ 방송중계;
 - ⑥ 머천다이징 및 호스피탈리티;
 - ⑦ 클럽 운영 (예, 행정, 홈경기 운영, 출장, 스카우팅, 등);
 - ⑧ 파이낸싱 (재정 확보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자산에 대한 담보 포함);
 - ⑨ 경기장 및 훈련시설의 이용 및 운영;
 - ⑩ 유소년 육성.
- 4)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은 보고 범위에서 제외된다:
 - ① 상기 3)에 정의된 축구 관련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활동 및/또는 축구 클럽의 위치, 자산 또는 브랜드; 또는
 - ② 보고 범위에 포함되나 상기 3) ①부터 ②까지 정의된 축구 관련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법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법인; 또는
 - ③ 시행 중인 축구 관련 활동이 이미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법인 중 하나의 재무제표 내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경우

5) 라이선스 신청자는 아래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서명된 약속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상기 3)에 명시된 모든 축구 관련 활동 각각에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보고 범위 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부 내역서를 제출;
- ② 보고 범위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법인이 그룹 구조 내 포함된 기업인지 여부와 상기 4)와 관련된 이유로 보고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8.2 필수 보고기간, 보고 및 회계 형식에 대한 최소 요구기준 뿐만 아니라 아래의 각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은 매뉴얼,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 및 AFC Financial Handbook Reference Library를 참조한다.

| F.0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 Annual Financial Statements - Audited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의 법적 구조와 관계없이, 주식회사에 대한 국내법을 기초로 결산재무제표가 준비되어야 하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p> <p>2. 상기 제1조의 라이선스 신청자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2)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3) 제2조의 개정규정 중 1)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2)항의 시행과 동시에 1)항을 폐지한다.</p> <p>3. 구단의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함)은 해당 구단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구단은 연중 내부관리를 위해 자체 기장을 진행하여야 한다.</p> <p>4. 구단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구단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구단은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p> <p>5.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는 AFC로 라이선싱 결정 목록 제출 마감일의 직전 회계연도 법정 마감일에 관한 것 이어야 한다. (예, 2023/24 라이선싱 사이클 시, 2023년 회계감사 재무제표 제출) K리그 라이선싱 사이클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클의 직전 연도 회계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예, 2023 라이선싱 사이클 시, 2022년 회계감사 재무제표 제출)</p> <p>해당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요회계정책의 요약과 포함 주석 및 비고 (설명문); 6) 경영진에 의한 재무검토.</p> <p>6. 구단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받아야 한다.</p> <p>7. 감사인은 해당 구단이 F.07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AFC 기준 – 추가 요구사항</p> <p>8.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는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에 규정된 회계정책 및 최소공시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p> <p>9.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가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에 규정된 회계정책 및 최소공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부속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회계감사관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p> | | | | |

| F.0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검토된 반기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Interim Period – Reviewed | A | A | A | A |
| K리그 | | AFC | | |
| 1. 라이선스 신청자의 직전 회계연도 마감일이 K리그 라이선스 이행 마감일 보다 6개월 이상 앞서는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6월 30일까지의 반기 기간을 다루는 추가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 1. 라이선스 신청자의 직전 회계연도 마감일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클럽 명단의 AFC 제출 마감일 (매년 5월 31일)’ 보다 6개월 이상 앞서는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반기 기간을 다루는 추가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 | | |
| 2. 반기 재무제표를 준비 및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법정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까지의 반기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관을 통한 검토 및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 | | | |
| 3. 구단의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함)은 해당 구단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구단은 연중 내부관리를 위해 자체 기장을 진행하여야 한다. | | | | |
| 4. 구단의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구단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구단은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 | |
| 5. 구단이 제출하는 반기재무제표는 검토인으로부터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을 받아야 한다. | | | | |
| 6. 해당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요회계정책의 요약과 포함 주석 및 비교 (설명문); 6) 경영진에 의한 재무검토. | | | | |
| AFC 기준 – 추가 요구사항 | | | | |
| 7. 반기 재무제표는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에 규정된 회계정책 및 최소공시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 | | | |

| F.0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선수 이적을 통해 발생한 타 축구 클럽에 대한 지급금 미연체 No Overdue Payables towards Football Clubs arising from transfer activities | A | A | A | A |
| K리그 | | AFC | |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대상 시즌의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선수 이적 관련 활동에 의해 발생한 타 축구 클럽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p> <p>해당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증빙해야 한다.</p>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대상 시즌의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선수 이적 관련 활동에 의해 발생한 타 축구 클럽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p> <p>해당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증빙해야 한다.</p> | | | |
| <p>1) 미지급금 전액 상환; 또는</p> <p>2) 채권자와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지급기한을 연기; 또는</p> <p>3) 해당 미지급금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라이선서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 규정에 명시된 마감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사건 종결 시까지 미지급금을 간주된다.</p> | | | | |
| <p>2. 라이선스 신청자는 협회 ‘등록규정’, FIFA ‘RSTP’에 명시된 육성지원금,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통해 지급대상 클럽 확인과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p> | | | | |

| F.04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피고용인 및 사회보장기관/국세청 등에 대한 지급금 미연체 No Overdue Payables towards Employees and social / tax authorities | A | A | A | A |
| K리그 | AFC | | |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대상 시즌의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적, 법적 의무의 관점에서 전현직 피고용인 및 사회보장기구/국세청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 해당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증빙해야 한다.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대상 시즌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적, 법적 의무의 관점에서 전현직 피고용인 및 사회보장기구/국세청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하며, 해당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후 대상 시즌의 해당년도 3월 31일까지 채권자와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지급기한을 연기해야 하며 또는 근거가 명확치 않은 분쟁 상황으로 분쟁조정을 위해 주무관청에 접수된 상태여야 한다. | | | |
| K리그 기준 - 추가 요구사항 1) 미지급금 전액 상황; 또는 2) 채권자와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지급기한을 연기; 또는 3) 해당 미지급금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단, 라이선서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본 규정에 명시된 마감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사건 종결 시까지 미지급금을 간주된다. | | | | |
| 2. “피고용인” 용어는 최소 다음을 포함한다: 1) ‘FIFA RSTP’에 정의된 모든 프로선수; 및 2)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인사 및 행정 기준’ 내 명시된 행정, 기술, 의료 및 안전 담당자 3. 피고용인에 대한 미지급금은 월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해 계약적 또는 법적 의무의 결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한다. 4. 라이선스 신청자는 가능한 모든 적절한 방식을 통해 피고용인 및 관공서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F.05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p style="text-align: center;">라이선싱 결정전 진술서 Written Representations prior to the Licensing decision</p> | A | A | A | A |
| <p>1. 클럽자격심의위원회 (FIB)를 통한 라이선싱 결정 7일전 이내,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서에게 해당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2. 진술서를 통해 아래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서에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온전하며 정확하다.; 2) 모든 라이선싱 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 3) 직전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 또는 검토된 반기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상의 기준 날짜 이후 라이선스 신청자의 재정 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주요 경제적 중요 사건 또는 상황 발생 시, 경영진 진술서에는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및 이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여 서술하거나 해당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4)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8.2.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라이선스 신청자와 계약적 관계를 가진 협회의 등록 회원) 또는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라이선스 신청자의 모기업이 라이선스 시즌 직전 12개월 이내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 채권자 보호를 구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p>3. 경영진의 승인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집행 기구를 대표하여 서명의 형태로 증빙되어야 한다.</p> | | | | |

| F.06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미래재무정보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 A | A | A | A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시즌이 끝날 때 까지 클럽 운영에 대한 현상 유지가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 라이선서에게 미래재무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2. 미래재무 보는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의 회계연도 법정 마감일 직후 시작되는 기간 또는 해당 시, 반기 재무제표 내 대차대조표상의 기준 날짜 직후 시작되는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라이선스 시즌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p> <p>3. 미래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회계연도 및 반기 (해당 시)의 수치 대비 예산된 손익계산서; 2) 직전 회계연도 및 반기 (해당 시)의 수치 대비 예산된 현금유동성 (현금흐름); 3) 예산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와 미래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대비한 주요 추정치 (역사적 재무정보 및 기타 정보의 관련 측면을 참고로 한)의 각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주석. <p>4. 미래재무정보는 최소 분기별로 준비되어야 한다.</p> <p>5. 미래재무정보는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를 기초로 준비되어야 하며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방침을 따라야 한다. 단, 가장 최근의 연간 재무제표 날짜 이후 다음 연간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위한 회계방침 변경은 제외하며, 이 경우 세부 변경내용이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p> <p>7. 추정치를 기초로 하는 미래재무정보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간단한 설명 및 재무보고실체의 집행부를 대표하는 서명 등의 형태로 증빙되어야 한다.</p> <p>AFC 기준 – 추가 요구사항</p> <p>8. 미래재무정보는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에 명시된 최소 공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확한 설명 또는 생략에 따라 미래재무정보를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 추가 항목 또는 주석을 포함해야 한다.</p> | | | | |

| F.07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 C | C | C | C |
| 1. 구단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 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 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 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B-클럽 라이선싱 기준’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A-클럽 라이선싱 기준’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 | | | |

| F.08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자본잠식 Impaired capital | C | C | C | C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한다. 2. 이 규칙은 2031년 1월 1일부터 ‘A-클럽 라이선싱 기준’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 | | | |

후속 정보 (Subsequent Information)

F.09 및 F.10 기준은 라이선싱 결정 이후에도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F.09 기준 (후속 사건 통지 의무)는 모든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F.10 기준 (미래재무정보의 최신화 의무)은 하나 이상의 지표 위반이 확인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

| F.09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후속 사건 통지 의무 Duty to notify subsequent events | A | A | A | A |
| 1.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라이선싱 결정 후, 라이선스 소지자는 최소한 라이선스가 승인된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클럽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후속 사건 발생 시, 이를 즉시 라이선서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 | | |
| 2. 다음 라이선스 주기에 있어서 본 기준의 준수는 라이선서에 의해 평가되어 진다. | | | | |

| F.10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미래재무정보의 최신화 의무 Duty to update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 A | A | A | A |
| 1. 라이선스 소지자가 아래 지표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경우, 라이선스 소지자는 미래재무정보를 최신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F.06에 따라 준비) 추가적으로, 준비된 정보는 차이 발생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실제 수치와 예산간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미래재무정보의 수정본은 최소 6개월 단위로 준비되어야 한다. | | | | |
| 지표1: 계속기업 기준 F.01 및 F.02에 따라 제출된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내 계속기업과 관련해 단서가 붙는 의견/결론 또는 관련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 | | | | |
| 지표2: 역자산 기준 F.01에 따라 제출된 연간 회계감사 재무제표 (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 내 전년도 회계감사 재무제표의 수치 대비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나타내거나, 기준 F.02에 따라 제출된 반기 재무제표 (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 내 직전 회계마감일 시점의 수치 대비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나타낼 경우 | | | | |
| 2. 다음 라이선스 주기에 있어서 본 기준의 준수는 라이선서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 | | | |
| AFC 기준 – 추가 요구사항 | | | | |
| 3. 최신화된 미래재무정보는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에 규정된 최소 공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 | |

19조 (Article 19): 마케팅 및 세일즈 기준 (Marketing and Sales Criteria)

| M.0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마케팅 전략 Annual Marketing Plan / Strategy | C | C | C | C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티켓판매 및 관중 증대를 위해 매년 통합 마케팅 사업계획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 | | |

| M.0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온라인 홍보 채널 Club Website and Social Media | C | C | C | C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팬 기반을 확장하고 잠재적인 팬들의 관심을 이끌어 신규 팬으로 유입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매체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 뉴스와 경기일정 및 결과, 선수단 프로필 등을 소개하는 클럽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3. 라이선스 신청자는 대중화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소 2개 이상의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외 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클럽 웹사이트 내 영문 페이지를 서비스하거나 영문 SNS를 개설해야 한다. | | | | |

| M.0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LED A보드 LED Display Advertising Board | C | C | C | C |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관중들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광고 연출을 통해 기업들에게 최적의 광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LED A보드를 경기장 내 필드(FOP)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2. LED A보드는 필드를 둘러싼 3면 중 최소 1개면 이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 | | | |

20조 (Article 20): 사회적 책임 기준 (Football Social Responsibility Criteria)

| R.01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인종 평등 실천 Racial Equality Practice | A | B | B | B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축구 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신청자의 모든 선수와 스태프는 클럽의 인종차별 금지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정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R.02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저변확대 (풀뿌리) 프로그램 Grassroots Programs | A | B | B | B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연고 지역 내 다양한 시민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을 대상으로 한 축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신청자의 저변확대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축구 경기에 대한 더 큰 관심 고조, 사회적 포용에 대한 더 많은 기회 제공, 스포츠적 및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발전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것이다.

| R.03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사회공헌활동 (CSR) 프로그램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s | B | C | C | C |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홈경기를 홍보하고, 축구와 지역사회 내 현안 해결에 필요한 전략 수립과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2. 상기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신청자, 협회, 연맹, AFC 및 FIFA 등에 의해 공표된 전략 및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계획 및 캠페인 형식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1) 팬 베이스의 확립 및 확장;
 - 2) 자원봉사자 인력 확보;
 - 3) 지역사회 내 청소년 저변확대를 위한 축구 활동, 계획 및 행사;
 - 4)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
 - 5) 브랜딩, 머천다이징, 후원사 및 마케팅 파트너를 위한 시장기반 구축.

| R.04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어린이 보호 및 복지 Child Protection and Welfare | B | C | C | C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관련 AFC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잠재적인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라이선스 신청자가 개최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축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p> <p>2. 라이선스 신청자는 연고 지역 기반의 어린이 보호 전문가와 협업하며, 어린이 보호 정책 수립을 포함한 해당 조치를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 어린이 보호 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p> | | | | |

| R.05 기준 설명 | K리그1 | K리그2 | ACLE | ACL2 |
|---|------|------|------|------|
| 환경 데이터 관리 Examina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Football Events and Activities | C | C | C | C |
|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다양한 활동에 이용되는 직간접적 에너지원에 대한 온실가스 데이터를 측정 및 관리하고,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 <p>2. 라이선스 신청자가 관리하는 환경데이터는 최소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단 온실가스 기준연도 설정, 감축 목표 및 실행계획; 2) 연간 구단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데이터(경기장, 사무실, 클럽하우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cope1 : 구장 및 구단에서 직접 사용하는 화석연료 - 가솔린, 디젤, 등유, 천연가스 등 ② Scope2 : 구장 및 구단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에너지 - 전기, 스팀 등 ③ Scope3 : 이해관계자의 에너지 사용 - 경기 관전을 위한 팬들의 이동, F&B, 굿즈 제작 등 3) 연간 경기장 폐기물 배출량 및 용수 사용량. <p>3. 상기 제2조 2)항, 3)항의 데이터는 연맹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연맹이 제공하는 환경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p> <p>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B-클럽 라이선싱 기준'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p> | | | | |

별첨 1 (Annex 1): K리그 참가를 위한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for K LEAGUE1, K LEAGUE2)

A. 원칙 (Principle)

1. 본 예외 정책은 K리그1 및/또는 K리그2에 한해 적용된다.
2. 연맹은 10.2.2조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다음 사안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다:
 - 1) 규정 11조에 정의된 주요평가절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국내법 또는 기타 이유로 미적용;
 - 2) 규정 11.3조에 정의된 평가방식을 국내법 또는 기타 이유로 미적용;
 - 3) 규정 14조부터 20조 내 정의된 일부 기준을 국내법 또는 기타 이유로 미적용;
 - 4) 규정 14조부터 20조 내 정의된 기준의 분류 또는 기준의 실행에 대한 도입 기간의 연장.
3. 1), 2), 4) 항과 관련된 예외는 K리그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한 연맹에 등록된 모든 클럽에게 적용된다. 3)항과 관련된 예외는 라이선스를 신청한 개별 클럽에게 적용된다.
4. 원칙적으로 예외는 한 시즌의 기간만 인정된다. 특정 상황 하에서 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클럽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예외의 갱신은 신규 요청 시 가능하다.

B. 절차 (The Process)

1. 연맹 사무국은 예외 요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이다.
2. 예외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클럽은 상기 'A. 원칙' 내 2조에 정의된 항목에 대한 예외를 클럽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주요평가절차의 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 연맹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AFC 사무국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다.
5. 결정사항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해당 결정은 사유를 서술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6. 연맹 사무국의 결정에 대해 연맹 이사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정은 최종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별첨 2 (Annex 2): K리그2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승인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K LEAGUE)

1. 본 임시 승인 신청은 신규 가맹클럽의 K리그2 참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본 신청은 신생팀의 첫 번째 시즌에만 적용된다.
2. 규정 7.9.2조에 명시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에 대한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은 14조부터 20조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3. CLA는 신규 가맹 클럽 또는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클럽에게 늦어도 라이선스 발급 시즌 직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해당 클럽에 서면으로 신청을 고지해야 한다.
4. CLA는 해당 클럽에게 임시 승인 절차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CLA는 임시 신청 절차에 대해 해당 클럽의 준비를 지원한다.
5. 해당 클럽은 라이선스 발급 시즌 직전년도의 10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상의 증빙자료를 CLA에 제출해야 하고, CLA는 클럽이 최소 요구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한다.
6. 의사결정기구 (9.4조 참조)는 수신한 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경우 K리그2 참가를 승인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별첨 3 (Annex 34):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 일정

(K LEAGUE Club Licensing Core Process Calendar)

| 단계 | 요건 | 마감일 |
|----|---|-----------------|
| 1 | CLA는 클럽에게 라이선싱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할 것을 요청 | 회람을 통한 별도 통보 |
| 2 | 라이선싱 신청자는 라이선싱 신청 의사를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통보 (첨부된 양식 사용) | |
| 3 | CLA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템플릿을 제작하여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배포 | |
| 4 | 라이선싱 신청자는 각 기준에 대한 해당 증빙자료가 포함된 서류 (설문지, 템플릿 등)를 작성 완료하여,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CLAS)을 통해서 제출. 출력물, 인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 |
| 5 | CLA는 전체 기준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각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출 또는 기존 제출된 서류의 수정 등을 권고하는 서면 피드백을 작성 | |
| 6 | 라이선싱 신청자는 CLA의 권고에 따른 서류 재제출 | |
| 7 | CLA 실사 진행 (필요 시) | |
| 8 | 라이선싱 신청자는 매년 6월 30일 기준 타 클럽 또는 피고용인에 대한 미지급금 신고 | |
| 9 | 라이선싱 신청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8번에 해당되는 미지급금 상황, 양자간 합의 또는 소송 진행 증빙 | |
| 10 | CLA는 라이선싱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FIB에 제출 | |
| 11 | FIB는 라이선싱 평가 보고서 및 라이선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K리그1/K리그2 라이선싱 승인/불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서면 결정문을 각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발송 | |
| 12 | FIB 결정에 이의가 있는 라이선싱 신청자는 FIB 결정문 수신 7일 이내 사유를 명시하여 CLA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 (해당 시) | |
| 13 | AB는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재심 청구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재심청구인에게 서면 결정문 발송 | |
| 14 | CLA는 매년 11월 30일까지 AFC, 협회, 연맹에 라이선싱 결정 목록 제출 | |

별첨 4 (Annex 4): AFC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 일정

(AFC Club Licensing Core Process Calendar)

| 단계 | 요건 | 마감일 |
|----|---|-----------------|
| 1 | CLA는 클럽에게 라이선싱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할 것을 요청 | 회람을 통한 별도 통보 |
| 2 | 라이선싱 신청자는 라이선싱 신청 의사를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통보 (첨부된 양식 사용) | |
| 3 | CLA는 AFC 클럽 라이선싱 템플릿을 제작하여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배포 | |
| 4 | 라이선싱 신청자는 각 기준에 대한 해당 증빙자료가 포함된 서류 (설문지, 템플릿 등)를 작성 완료하여,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CLAS)을 통해서 제출. 출력물, 인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 |
| 5 | CLA는 전체 기준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각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출 또는 기존 제출된 서류의 수정 등을 권고하는 서면 피드백을 작성 | |
| 6 | 라이선싱 신청자는 CLA의 권고에 따른 서류 재제출 | |
| 7 | CLA 실사 진행 (필요 시) | |
| 8 | 라이선싱 신청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타 클럽 또는 피고용인에 대한 미지급금 신고 | |
| 9 | 라이선싱 신청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8번에 해당되는 미지급금 상황, 양자간 합의 또는 소송 진행 증빙 | |
| 10 | CLA는 라이선싱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FIB에 제출 | |
| 11 | FIB는 라이선싱 평가 보고서 및 라이선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AFC 라이선싱 승인/불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서면 결정문을 각 라이선싱 신청자에게 발송 | |
| 12 | FIB 결정에 이의가 있는 라이선싱 신청자는 FIB 결정문 수신 7일 이내 사유를 명시하여 CLA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 (해당 시) | |
| 13 | AB는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재심 청구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재심청구인에게 서면 결정문 발송 | |
| 14 | CLA는 매년 5월 31일까지 AFC, 협회, 연맹에 라이선싱 결정 목록 제출 | |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럽라이선싱팀

www.kleague.com

TEL. 02-2002-0685 | FAX. 02-2002-0671